
2019

경기도 시각장애인 욕구실태조사

2019. 4.



Community Agency of Blind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2019
경기도 시각장애인 욕구실태조사

2019. 4.

책임연구원 : 김 제 선 (교수, 백석예술대학교)

2019

경기도 시각장애인 욕구실태조사

발행월 2019년 4월

발행인 김진식

발행처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4층

TEL. 031-856-5300 FAX. 031-856-0300

홈페이지 <http://www.gbw.or.kr>

음성사서함 5300번(02-2092-9000번)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gsg0070>

■ 목 차 ■

□ 요약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 연구내용	3
2) 연구방법	3
II. 이론적 배경	5
1. 시각장애 및 시각장애인	5
1) 시각장애의 정의	5
2) 시각장애인의 정의 및 특성	6
3) 시각장애인의 현황 및 욕구 특성	8
2. 시각장애인복지관	17
1)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개념	18
2)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운영 현황	19
3. 시각장애인복지 정책과 제도	20

III. 조사결과	23
1. 조사개요	23
1) 조사대상 및 방법	23
2) 조사내용	23
2. 조사 결과	25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5
2) 응답자의 가구 특성	34
3) 일상생활 도움 및 어려움 관련 사항	44
4) 이동편의성 및 시설 이용 관련 사항	55
5) 건강 관련 사항	81
6) 취업 관련 사항	85
IV. 결론	91
참고문헌	101
[부록] 설문조사표	103

■ 표 목차 ■

<표 1> 시각장애인의 등급 및 장애 기준	7
<표 2> 경기도 장애인 종별 및 등급별 현황	11
<표 3> 조사 개요	23
<표 4> 조사 영역 및 내용	24
<표 5> 응답자의 성별	25
<표 6> 응답자의 연령대	26
<표 7> 응답자의 거주지역	28
<표 8> 응답자의 장애 발생 시기	29
<표 9> 응답자의 장애등급	30
<표 10> 응답자의 장애원인	31
<표 11> 응답자의 최종 학력	32
<표 12> 응답자의 주거형태	33
<표 13> 응답자 가구의 가족 인원 및 소득 가구원	34
<표 14> 가구의 주 수입원	35
<표 15> 결혼 및 배우자 유무	36
<표 16> 가구의 국기초 수급여부	37
<표 17> 가구의 월평균 소득	39
<표 18> 2018년도 최저생계비 현황	39
<표 19>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종류	40
<표 20>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종류	41
<표 21>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종류	42

<표 22> 일상생활 도움 필요성 및 제공자 현황	45
<표 23> 사회생활 도움 필요성 및 제공자 현황	47
<표 24> 안전 위협 시 도움 필요성 및 제공자 현황	49
<표 25> 하루 일과의 활동 상황	50
<표 26> 생활의 어려움 정도 및 공적 서비스 이용 경험여부	52
<표 27> 생활만족도	53
<표 28> 생활만족도 평균값	54
<표 29> 평균 주당 외출 횟수	55
<표 30> 외출 시 주된 이동 수단	56
<표 31> 독립보행 가능여부 상태(복수응답)	57
<표 32> 독립보행 시 도움 도구(복수응답)	59
<표 33> 독립보행 시 흰지팡이 또는 편의시설 이용경험 및 미이용 시 사유	61
<표 34>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하지 않고자 하는 이유	62
<표 35> 연간 시각장애인복지기관(시설) 이용 경험여부 및 알게 된 경로	63
<표 36> 거주 지역별에 따른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여부의 차이	64
<표 37> 시설 유형별 월평균 이용 횟수	65
<표 38>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이용 종류(복수응답)	66
<표 39>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 시 고려 사항	68
<표 40>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하고자 할 때 희망 시간(복수응답)	69
<표 41>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확대할 서비스(복수응답)	71
<표 42>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용여부	72
<표 43>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용에 대한 만족도	73
<표 44>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의 사용 만족도 평균값	74

<표 45> 기초재활교육 경험여부 및 종류	75
<표 46> 기초재활교육 기관(복수응답)	76
<표 47> 기초재활교육 기간	77
<표 48> 기초재활교육의 생활상 도움 정도 및 미도움 시 이유	78
<표 49> 기초재활교육 받을 시 가장 큰 애로사항	79
<표 50> 점자해독 기능 상태(복수응답)	80
<표 51> 만성질환 유무	81
<표 52> 자살 생각 경험여부	82
<표 53> 1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 생각 경험여부	82
<표 54> 주당 신체활동 경험일 수	83
<표 55> 우울감	84
<표 56> 현재 직업 활동여부 및 총 근무연수	85
<표 57> 현재의 직업 형태	86
<표 58>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무 장소	87
<표 59> 현재 직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복수응답)	88
<표 60> 취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복수응답)	89
<표 61>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의 사유	90

■ 그림 목차 ■

[그림 1] 우리나라 장애인 수 및 장애유형별 비율	9
[그림 2] 전체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의 시도별 현황	10
[그림 3] 경기도 시군별 시각장애인 현황	12
[그림 4] 우리나라 사회보험 가입률	43
[그림 5] 생활의 어려움 정도	52
[그림 6] 생활만족도 평균값	54
[그림 7] 독립보행이 가능한 경우의 대비율	58
[그림 8] 독립 보행 시 도움을 받는다고 한 경우의 대비율	59
[그림 9]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는다고 한 경우의 대비율	67
[그림 10]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 희망 시간의 대비율	70
[그림 11]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확대할 서비스의 대비율	71
[그림 12]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의 사용 만족도 평균값	74

〈요 약〉

□ 연구의 목적 및 개요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적 욕구의 경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욕구에 대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적절하고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등의 욕구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전문적인 접근과 더불어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적절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사업이나 프로그램, 또한 전국 최고의 지방정부로서 경기도의 시각장애인 복지 정책을 개발 및 시행하는 것을 모색하는데 있음.

○ 본 연구의 내용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소재하는 시각장애인의 욕구 조사와 관련 시각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적정성 등의 공급에 대한 분석 및 검토,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및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2018년 12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중 889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 조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 조사표를 활용한 1:1 개별면접 조사로 시행되었음.
- 조사 영역은 크게 6가지이며, 그 영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63문항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음.

□ 시각장애인의 현황 및 특성

○ 2018년 12월 기준 전국 장애인의 수는 2,585,876명이며, 시각장애인은 이 중 10% 정도에 해당하는 252,957명임(장애유형 중 4번째로 많음).

○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기도가 전체 장애유형에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인 역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음.

- 2018년 12월 기준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시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시(4,397명)와 고양시(3,974명) 등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음.
- 반대로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군은 과천시(180명)와 연천군(286명)이었음.



[그림] 전체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의 시도별 현황

□ 응답자의 가구 특성

- 가구의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평균 2명으로 보통 1명의 다른 가족 구성원과 살고 있고, 이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1명보다 작은 0.8명 정도에 이르고 있어 거의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가구원 중 주 수입원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본인인 경우가 약 10명 중 2-3명에 해당하였고, 소득이 없어 정부보조(연금 포함)로 소득이 유지 되는 경우가 가장 높은 약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로 인해 10명 중 3명은 일반수급가구이거나 조건부수급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은 평균 100만원 미만이 전체 응답자 중 50% 이상을 넘고 있어, 경기도시각장애인 2명 중 최소 1명 이상이 최저생계비(2018년도 1인 가구 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었음.
- 현재 배우자의 유무 등에 대해서 배우자가 현재 있는 경우는 약 10명 중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은 약 40% 정도, 국민건강보험은 약 60% 이상, 고용보험은 약 10% 정도에 불과한 수준에서 각각 가입된 상태

□ 일상생활 도움 및 어려움 관련 특성조사 결과

- 신변처리, 가정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서는 약 80%에 이르는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현재는 이러한 도움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 이용과 가족구성원이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요 약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 4배가 컸고, 이러한 필요한 정도에서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제공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제도 이용이나 가족구성원이 비교적 높았으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약 20% 정도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음.

- 안전을 위협 받거나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0%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약 10명 중 3명이 어려움에 처할 때 정작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으로 첫 번째로는 여가 및 문화 생활이었던 반면, 두 번째로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하루 일과를 유익하게 지내거나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시급함이라 할 수 있었음.
-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일상생활 유지와 체육 활동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어려움이 있었을 경우 공적 지원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여부에서 모든 영역에서 평균적으로 이용률이 40% 이하로 나타났음.
- 건강 등 9개 영역에 대한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자녀와의 관계(평균 3.85점), 배우자와의 관계(평균 3.84점), 사회적 친분관계(평균 3.75점), 가족 관계(평균 3.74점) 등 대부분 가족에 관한 사항에서는 만족도가 높았으나, 본인 및 가족의 수입(평균 2.38점), 본인의 건강(평균 2.69점), 직업(평균 2.7점)에서는 만족도가 낮았음.

□ 이동편의성 및 시설 이용 관련 특성조사 결과

- 일주일 중 평균 4.3일(표준편차 1.98) 외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외출을 못하는 편은 아닌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외출 시 주로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그다음이

2019 경기도 시각장애인 욕구실태조사

대중교통 중 버스와 지하철이었음.

- 독립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또는 집 주변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75.2%로 가장 많아, 대부분 가정 내와 그 인근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독립보행 시 도움이 되는 것에는 잔존시력 다음으로 흰지팡이(40.1%)이었음. 독립보행 시 실제로 흰지팡이나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찾아간 경험이 있는 경기도 시각장애인은 약 4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에 대해서는 약 60% 정도가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었음. 그러나 앞으로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 39.7%(348명)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혼자서 독립보행이 가능해서(36.7%)로 가장 높았고, 연령 또는 장애등급 제한 때문(21.6%), 그리고 경제적 부담 때문(19.4%)으로 나타났음.
- 2018년 한 해 동안 경기도 시각장애인 중 최소한 10명 중 8명이 시각장애인 복지기관(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시각장애인의 경기도 거주지역을 복지관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 유형화했을 때 30분 이내의 지자체 거주지역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30분 이내로 이동시간이 걸리는 지자체(지역1 유형) 지역에서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전체 이용률과 비교해 더 높은 이용률을 보였지만, 60분 이상의 이동시간이 걸리는 지자체의 지역(지역3 유형)과 30분에서 60분 이내의 이동시간이 걸리는 지자체의 지역(지역2 유형) 모두 전체 평균 이용률보다는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지역2 유형이 지역3 유형보다 더 이용률이 낮았음.
- 시각장애인 복지기관(시설)을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해 이번 2018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얼마나 이용했는가를 조사한 결과, 기관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음.

- 그중에서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중 지회가 가장 월평균 이용횟수가 많았는데, 월평균 11회 이상이 가장 높은 35.0%(225명)를 차지하였고, 시각장애인 중 절반 이상이 월평균 8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시각장애인 절반 이상이 월평균 2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월평균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27.3%에 이르고 있음.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가장 많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는 문화·여가서비스인 것으로, 그다음으로는 기초재활교육과 체육(건강) 활동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접근성(교통편)이 71.9%(441명)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으로 12.9%(79명)를 차지하였음.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 희망하는 시간에서는 시간대는 오전이 월등히 많았으며, 요일에서는 수요일 > 목요일 > 월요일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많았음.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더 확대해야 할 서비스로 1순위는 여가·문화 서비스, 2순위는 재가복지서비스, 3순위는 의료서비스로 나타났음.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해 본 적 있는가에 대해 2명 또는 3명 이내에서 있다고 응답해 비교적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고, 효과성(평균 3.97점)과 적합성/효율성(평균 3.95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사용의 용이성(평균 3.44점)과 내구성(평균 3.58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기초재활교육을 받은 경험이 받지 않은 경험보다는 조금 더 많게 조사되었으며, 기초재활교육 중에서 점자교육과 보행교육이 주로 차지하였고, 기초재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10명 약 7명에 가까운 시각장애

인들이 시각장애인연합회(지회)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기초재활교육 종류에 따른 교육 기간은 점자교육이 가장 길었고, 보행 교육, 컴퓨터(정보화)교육, 그리고 일상생활교육 순으로 길게 나타났음.
 - 또한, 기초재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이 생활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는 긍정적인 응답이 약 90%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다만, 기초재활교육을 받으려 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교육장소가 너무 멀어서로 조사되었음.
- 점자해독이 가능한가에 대해 가능한 경우(42.7%)보다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57.3%로 조금 더 많았고, 점자해독이 가능한 경우에서도 읽기만 가능한 경우이거나 쓰기만 가능한 경우가 비교적 높았으나, 각각 10명 중 1명씩 정도에 불과하였음.

□ 건강 관련 특성조사 결과

- 경기도 시각장애인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 더구나, 만성질환 중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고 있다는 응답이 67.0%(585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만성질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은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경우가 더 높았으나, 2018년 한 해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가 40.1%에 이르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
-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걷기, 등산, 자전거 타기 등의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인가에 대해 평균 3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혀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14.8%로 나타났음.
- 5점 척도로 구성된 우울감에 대한 11개 문항의 측정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의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1.91점으로 비교적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요 약

나타났음.

□ 취업 관련 특성조사 결과

-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은 직업 활동 즉,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79.0%(687명)로 나타나 직업 활동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직업 형태는 정규직(안마사 포함)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일용직(안마사 포함)으로 많았음. 정규직(안마사 포함)은 31.1%, 일용직(안마사 포함)은 22.8%, 자영업(안마사 포함)은 12.0%이었음.
- 현재 일을 하는 근무 장소는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기관(자립생활센터 등 포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일반사업체이었음.
- 현재 직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낮은 수입이었음.
- 취업 유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금전적 지원(임금보조, 세제지원 등)이라고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도 근무환경, 직무 관련 교육 및 훈련, 업무 지원 관련 정보제공,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지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주된 이유는 장애로 인한 업무 수행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음.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및 경기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노력해야 할 복지서비스 또는 정책 과제들

1.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지방정부 시각장애인 복지정책 개발과 복지서비스 제공

2019 경기도 시각장애인 욕구실태조사

- 첫째,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이동권 확보 및 서비스의 다양성과 실효성 제고
- 둘째, 지역사회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확대와 도내 권역별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기존 장애인복지관에 시각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률 확대
- 셋째, 저소득 시각장애인 가구 등의 소득이전을 위한 공적 급여 및 사회 보험료 지원
- 넷째, 청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개발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
- 다섯째,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건강 향상 및 유지를 위한 공적 의료건강 서비스 제공
- 여섯째, 생활 영역 및 독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확대 및 편의시설 의무 설치와 편의시설 이용률 확대
- 일곱째,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용률 개선 및 기초재활교육에 대한 지원 증대
- 여덟째, 시각장애인 스스로 점자를 활용해 이동 등 생활의 도움뿐 아니라, 교육이나 취업 등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자 자료 제작과 보급 확대 및 점자 교육 강화

2. 연계(network) 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첫째, 시각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각 지역에 시각장애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관련 기관(복지관, 지부나 지회, 단체 등)들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 둘째,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주요 복지시설 뿐 아니라 각종 공적 복지 서비스 기관, 민간 복지 서비스 기

관들과의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셋째, 경기도 외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등과 원활한 연계체제 구축

3. 시각장애복지 종사 전문인력의 인적자원개발 및 역량 강화

-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이며, 그 중에서도 전문 시각장애인복지직종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경기도 시각장애인에 관한 인식개선 사업

- 학생, 시민은 물론 정책 집행자, 공공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개선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임.

5. 연구 개발을 통한 시각장애인복지 정책 개발 및 보급

-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을 새로이 수립하고 이를 롤모델로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매년 전국적 수준에서 신뢰성이 높고 일반화될 수 있는 시각장애인복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연속적으로 지역분문 아니라 전국 표준의 시각장애인복지의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연구수행 예산 등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201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58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5,178만여 명) 대비 5.0%를 차지함.
 - 2017년(255만 명) 대비 3만여 명 증가한 수치임.
 - 15개 장애유형 구성비를 분석해 보면 지체장애 구성비가 가장 높고(49.3%), 그 다음은 청각(11.9%), 뇌병변·시각(9.9%), 그리고 지적장애인(7.9%) 등의 순임.
- 지역별로는 경기도 등록장애인 수가 54만 7천 386명(21.2%)로 가장 많음.
 - 더욱이, 전체 시각장애인 중 경기도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52,986명(20.9%)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광역 지자체임.
 - 경기도에 소재하는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시각장애인 구성비 또한 9.67%로 나타나, 전국 등록장애인 구성비 시각장애인 구성비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소재 시각장애인의 특이한 사항 중 하나는 65세 이상의 고령화된 장애인 구성비가 약 40% 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 이는 몇몇의 장애유형(발달장애, 내부장애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다른

(간 지)

유형의 장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함. 특히,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재의 추세를 본다면, 고령화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발생 구성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시각장애 발생원인 중 선천적인 구성비는 매우 낮으며, 역연령과 유병율(당뇨나 녹내장 등), 후천적인 사고와 환경에 따른 후천적인 시각장애 발생구성비가 거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동시에 검토할 때, 경기도 내 시각장애인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는 지적, 환경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정책과 제도, 지향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사회 통합적인 주체적인 삶의 영위를 실현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들 수 있음(양희택·조성재·황주연·백혜련·곽유나, 2014).
- 경기도의 경우 2013년 5월 27일 개관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이후에 경기도 거주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오고 있음.
-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2013년에 개관되었으나 시각장애인 인구대비 절대적인 수치도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물론, 경기도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경기도 남부에 소재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순수 민간단체로써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역할과 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임.
- 경기도 소재 유일한 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써의 전문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소재 시각장애인들의 욕구에 근거한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구축하고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적 욕구의 경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욕구에 대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적절하고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등의 욕구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전문적인 접근과 더불어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사업이나 프로그램, 또한 전국 최고의 지방정부로서 경기도의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을 개발 및 시행하는 것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가지며,
- 경기도 31개 시·군에 소재하는 시각장애인의 욕구조사와 관련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적정성 등의 공급에 대한 분석 및 검토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및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음.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실증적인 욕구를 알아

보고자 31개 시·군에 소재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하고 각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구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음.

- 첫째,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경기도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3개의 설문조사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 그리고 2018년도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등의 기존 조사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에 의하여 1차적으로 완성하였고,
- 이를 장애인복지 전공자 학계 2명, 현장전문가 3명, 그리고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TF팀에서 2차적으로 보완하였고,
-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인 조사응답자가 응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한 후 2회에 걸쳐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완성하였음. 이를 통해 조사표 구조와 문항 설계를 고려하였고, 조사표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점검하였음.

○ 조사대상의 모집단 및 표본 선정과정은 경기도 전체 시각장애인 등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시각장애인복지의 복지서비스 특성을 반영하도록 진행되었음.

II. 이론적 배경

1. 시각장애 및 시각장애인

1) 시각장애의 정의

- 시각장애(visual impairment)는 목적에 따라 교육적, 법적, 의학적으로 정의되지만, 나라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함(김원호·이유화·김시현, 2009).
- 일반적으로 교육적 정의는 잔존시력의 활용여부, 시기능, 시효율성 등에 관심을 두고, 맹(Blindness)과 저시력(Lowvision)으로 정의됨.
- 시각장애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감각체계와 전달된 정보를 분류·조직·비교·저장한 후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인 의사결정 활동에 사용하는 지각체계로 구성된 시각계의 손상에 의하여 시각의 주요 요소인 시력, 시야, 대비감도, 색각 등의 시기능에 제한이 있는 장애임.
- 중심시력, 시야, 색 지각 또는 양안기능에 영향을 주는 시각장애 해부학적, 기능적 이상이 있는 것을 말함.
- 의학적으로 시각장애에서 실명 또는 맹은 눈앞의 광선을 전혀 못 느끼는 절대맹과 그리 심하지 않으나 사회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감소된 사회맹 또는 법정맹으로 구분(정무성 외, 2012).
- 시각장애는 시력(visual acuity)과 시야(visual fields)라는 두 가지 시기능 요소를 기준으로 안과전문의에 의해 판정됨.

-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국가에 따라 그리고 각 국가의 법률의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음.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교정시력 0.05이하 이거나 시야 20도 이하인 경우 시각장애로 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시각장애를 법적인 실명(legal blindness)과 저시력(low vision)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법적인 실명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이거나 시야가 20도 이하인 시각적 조건이며 저시력은 교정시력이 20/200(0.1) 이상 20/70(0.3) 이하를 말함(최진한, 2014).

2) 시각장애인의 정의 및 특성

- 시각장애인이란 위의 시각장애 증상의 상태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시각장애를 시력장애와 시야결손 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시각장애인은 동 상태를 가진 사람을 말함.
- 시각장애인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임.
 -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시각장애인의 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이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정해져 있음.

<표 1> 시각장애인의 등급 및 장애 기준

등급	장애 기준	비고
제1급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자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를 참조해 작성함

- 일반적으로 시각은 모든 사물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을 내리는 핵심적인 감각기관으로 시력을 잃게 되며, 시각장애를 갖게 되는 연령과 시력 상실 정도, 개인적 상황이나 조건, 대처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김육미, 2008).
-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시각장애인은 잔존시각이나 다른 감각을 사용해야 하기에 신체적, 감각적으로 경험하거나 정보접근, 습득 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안인(비시각장애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신체적, 감각적 특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이나 운동능력에 있어서 사회적인 지원 또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상 시각적으로 정보를 얻는 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통행할 때 필수적인 보행 정보를 보행 폭, 보행

거리, 발바닥의 감촉, 음향, 주변 상황 감지 등을 통해 수집하는데 매우 의존함.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인과 달리 다양한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많은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자율적인 이동 통행권 제공’을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김원호·이유화·김시현, 2009).

- 둘째, 신체, 감각기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활동 등에 제한을 당하기에 이와 연계되어 나타나는 심리적,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특성임. 사회활동 등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 열등감, 우울감, 사회부적응 등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등을 토마스 캐롤(Thomas Carroll)은 심리적 상실감으로 규정 및 6가지로 구분함.
- 첫째, 심리적 안정에 대한 기본적인(시각능력, 잔존감각 자신감, 환경의 가시적 존재, 시야배경, 빛의 안정감 등) 상실
- 둘째, 기본생활(일반적 신체 활동, 일상생활 등) 기술의 상실
- 셋째, 의사전달(문자에 의한, 일반적인 활자 정보에 의한) 능력의 상실
- 넷째, 감상력(시각에 의한)의 상실, 다섯째, 직업 및 경제안정의 상실
- 여섯째, 전인적 형성(개인적인 독립성, 사회참여, 자존감, 독립적 활동에 의한 개별성 등)의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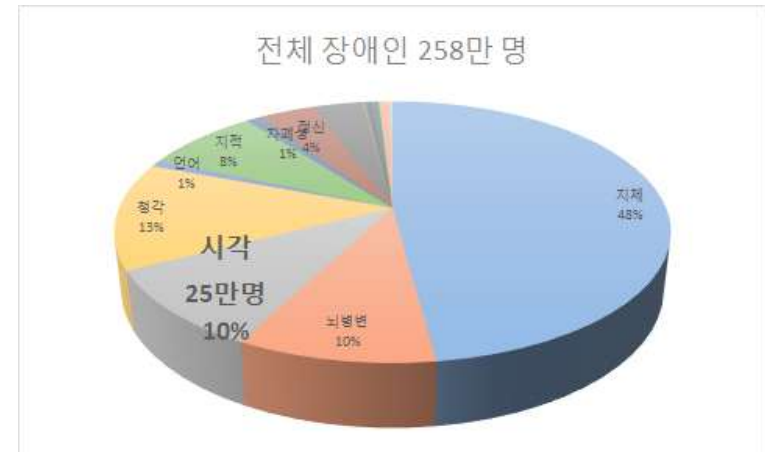
3) 시각장애인의 현황 및 욕구 특성

- 2017년 말 기준 시각장애인의 출현율은 인구 1,000명당 6.34건으로서 시각장애인은 309.1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됨(보건복지부, 2018b).
- 이 출현율은 2011년 5.99건과 비교하면 0.35건 높아진 것으로 전체적인 장애인 출현율이 감소 되는 상황에서 시각장애 출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함.

- 그 이유로는 시각장애인의 89.4%가 유전성 및 후천성 안질환과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장애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음(김호일, 2018).

○ 2018년 12월 기준 전국 장애인의 수는 2,585,876명이며, 시각장애인은 이 중 10% 정도에 해당하는 252,957명임.

- 이처럼 시각장애는 지체장애와 청각장애, 그리고 뇌병변장애의 유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장애 유형임.



[그림 1] 우리나라 장애인 수 및 장애유형별 비율

* 출처: 보건복지부(2018a)

-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기도가 전체 장애유형에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인 역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음.
- 전체 장애인(2,585,876명) 중 경기도 장애인(547,386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1.2%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 시각장애인의 경우도 전체 시각장애인 252,957명 중 20.9%를 차지하는 52,98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음. 이는 전체 장애유형과 비슷한 비율을 차지함.



[그림 2] 전체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의 시도별 현황

경기도청(2019). <https://www.gg.go.kr/archives/2278148>

- 2018년 12월 기준 경기도 장애인의 종별 및 등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 유형이 4번째로 많았으며, 등급에서는 6급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급이었음.

- 경기도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은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다음으로 많은 52,988명이었음.
- 경기도 시각장애인 중 6급은 가장 많은 36,315명이었고, 그다음으로 1급으로 6,209명이었음. 5급은 4,313명, 4급은 2,647명, 3급은 2,270명, 그리고 2급은 1,234명이었음.

<표 2> 경기도 장애인 종별 및 등급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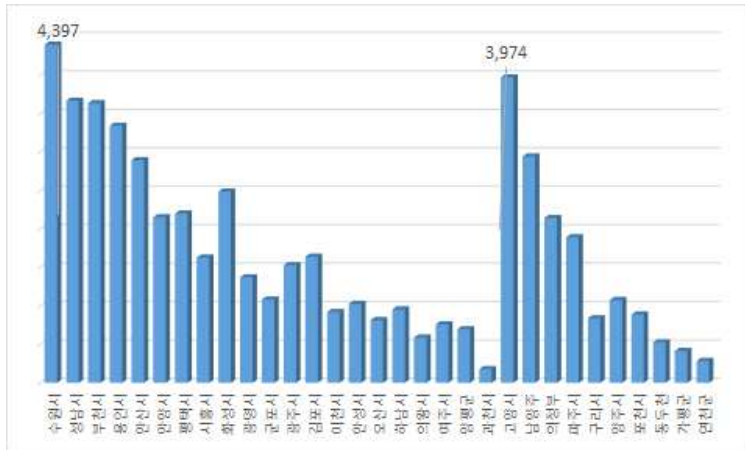
(기준: 2018년 12월, 단위: 명)

장애유형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547,386	43,515	71,984	92,298	78,751	117,750	143,088
지체	268,731	7,180	12,626	32,021	48,563	77,276	91,065
뇌병변	54,606	12,648	10,467	12,126	6,724	6,502	6,139
시각	52,988	6,209	1,234	2,270	2,647	4,313	36,315
청각	64,102	1,581	9,279	8,581	14,992	20,100	9,569
언어	4,517	11	433	1,770	2,302	1	0
지적	42,933	11,106	14,342	17,485	0	0	0
자폐성	7,037	2,771	3,153	1,113	0	0	0
정신	19,016	327	4,793	13,896	0	0	0
신장	21,070	1,162	14,469	13	192	5,234	0
심장	1,302	27	154	889	13	219	0
호흡기	2,506	385	765	1,304	1	51	0
간	3,153	54	44	95	94	2,866	0
안면	626	21	101	216	257	31	0
장루요루	3,389	3	31	286	2,162	907	0
뇌전증	1,410	30	93	233	804	250	0

출처 : 경기도청(2019). <https://www.gg.go.kr/archives/2278148>

- 2018년 12월 기준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시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시(4,397명)와 고양시(3,974명) 등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음.
- 반대로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군은 과천시(180명)와 연천군

(286명)이었음.



[그림 3] 경기도 시군별 시각장애인 현황

* 출처: 경기도청(2019). <https://www.gg.go.kr/archives/2278148>

□ 시각장애인으로 갖는 특징이나 복지서비스 차원의 욕구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토마스 캐롤은 실명으로 인하여 함께 상실되는 기능을 심리, 기초생활기술, 의사소통능력, 감상능력, 직업과 경제적인 면, 전인격구성 등으로 분류했음.
- ① 심리적 안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실은 신체적 완전성의 상실, 잔존감각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접촉능력의 상실, 시각적 배경의 상실, 빛에 대한 안전감의 상실 등임. ② 기초적 생활기술의 상실은 이동능력의 상실, 일상생활기술의 상실 등임. ③ 의사전달능력의 상실은 문자에 의한 의사전달능력의 상실, 대화의 편의성 상실, 정보와 그 움직임을 알아낼 능력의 상실 등임. ④ 감상력의 상실은 시

각으로 얻는 즐거움의 상실, 시각으로 얻는 아름다움의 상실 등임. ⑤ 직업 경제적 안정에 관한 상실은 레크레이션의 상실, 직업경력·직업목표·취업기회의 상실, 경제적 안정의 상실 등임. ⑥ 결과적으로 전인격형성의 상실은 개인적 독립성의 상실, 남만큼 동등한 사회참여의 상실, 자기 은폐의 상실, 자존심의 상실, 총체적인 인격 구성의 상실 등임

- 때문에 이러한 상실들에 대비해 각각의 사회서비스가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함. 예를 들어, 신체상실의 경우는 심리치료서비스를, 육체활동과 일상생활기술 상실의 경우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문자에 의한 의사전달 편의 상실의 경우는 점자와 컴퓨터 교육서비스를, 직업 및 직업창출 기회 상실의 경우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전인적 상실의 경우는 정보화 교육이나 스포츠 및 여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임 (김정희, 2007).

- 두 번째, 시각장애를 초래하는 원인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굴절이상, 백내장,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변성 등이지만 시각장애의 발현양상은 사회와 시대에 따른 약간씩 다른 편임(전은영, 2015).
- 시각 장애의 원인이 선천적이라는 20.5%의 응답률보다 질병에 의해서라는 응답 62.5%와 사고에 의해서 시력을 잃었다는 응답률 14.3%는 후천적인 원인이 76.8%라는 것을 의미하고, 장애인 95%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는 장애인으로 그 수가 증가한다는 내용과 같은 결과를 나타냄 (이숙정, 2013).
- 세 번째, 시각장애 발생률은 50세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80대에 이르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서 시각장애는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시각장애노인들은 일반노인들보다 더 심하게 사회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으며,

- 주요 여가시간에 보내는 활동으로는 ‘대중매체를 접한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다’, ‘잠을 잔다’ 등의 응답이 상당수 있었고,
- 월 평균 소득이 저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 다수 있어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전은영, 2015).

○ 네 번째, 시각장애인에게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 일상생활습관은 더욱 악화되어 흡연, 비만, 신체활동 감소, 자가간호 결핍, 사회활동 참여 저하 등이 나타남.

- 운동에 참여하는 시각장애그룹이 비장애그룹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동 및 신체활동이 중요성은 시각장애인에게 더욱 강조됨..
- 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금연, 건강한 식습관, 신체활동 촉진 등의 중재가 반드시 있어야 됨이 강조됨(전은영, 2015).

○ 다섯 번째,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취업의 중요한 방해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은 시력의 한계와 시야의 결손으로 시력을 요하는 공간 판단력, 운동조절 능력, 형태 지각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서는 능력적인 부분에서 단점으로 제시되고 있음.

- 시력과 시야를 잃어 볼 수 없거나 보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직장을 가지며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으로 시각장애인의 직업별은 무직이 51.8%로 높게 나타남. 무직은 곧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숙정, 2013).
- 시각장애인 취업자는 98,282명이며 고용률은 39.3%로 전체적인 고용률 36.0%보다 높음. 또한 전체적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의 경우 38.3%이며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3.0%로 전체 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음(최진한, 2014).

○ 여섯 번째, 장애의 유형별로 사회참여의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시각장애인은 지체장애인과 더불어 타 장애유형에 비해 물리적 접근성과 이동성이 떨어져 복지서비스의 이용률뿐만 아니라, 취업활동과 각종 사회활동, 취미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음.

- 시각장애인은 자율적이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¹⁾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보행 안전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김원호·이유화·김시현, 2009).
- 사회취약계층 중에서도 장애인, 그리고 더 특정화하여 시각장애인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도시지역보다 공간적 범위가 넓고 교통수단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도시지역에서 접근성의 제한을 받음. 사회복지에서 접근성은 주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관련한 사회복지정책과 그것을 전달하는 조직 및 체계 간의 기능, 그리고 복지서비스 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식되어 왔음. 사회복지실천의 입장에서 정책과 제도가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통해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서비스로 제공되느냐와 관련된 것임. 개별 대상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애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없애기도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이용 시 장애가 없어야 함을 접근성이 기준 원칙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 따라

1)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교통 정보는 탑승자들에게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시각을 통해야만 습득할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독립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맹을 제외한 약시의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과 외향상으로는 다른 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도움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변 환경으로부터 안전에 관하여 자유롭지 못하다. 전맹인 경우는 약시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다.”(김원호·이유화·김시현, 2009: 113).

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종의 중요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인정되고 있음(김제선·김창기, 2017)

- 가족 및 사회적 지원에 대한 조사에서 격려나 지지 등 정서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57.7%, 외출 시 동행이나 물질적 도움 등 도구적 지원은 47%이지만 취업이나 사회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조언 등 정보적 지원은 18%만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김호일, 2018).
- 일곱 번째, 시각장애인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에 덜 참여하며 시각장애인의 여가생활이 사회적 관계 형성 기회의 증가와 긍정적 정서 유발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시각장애인은 성공적으로 사회적응을 해낼 수 있으나, 장애에 대한 부정적 수용으로 위축된 자아존중감을 가진 시각장애인은 사회적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김상원·엄문설·안새미·이양희·조준동, 2018; 김호일, 2018).
- 여덟 번째,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인데 시각장애인 가운데에도 중도실명자들은 시력 상실과 동시에 여건상 생업을 포기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주게 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과 시각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회참여의 방해 요인이 됨(이기중, 2017; 김호일, 2018).
- 아홉 번째, 최근 정보화시대에서 시각장애인은 시각의 손실로 인해 그 대체 감각으로서 주로 청각적 듣기와 촉각을 통해 정보접근을 해 왔음.
- 특히 컴퓨터와 장애인용 보조공학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습득하고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보편화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의 정보 매체로는 점자와 녹음 매체가 대표적임.
-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고유 문자로, 6개의 점을 위치 별로 일부 또는 전부가 블록 나오게 찍음으로써 한글, 영문, 기타 기호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점자 문서는 제작에서 제한적이다. 먼저 비용이 많이 들고 제작 기간이 김. 또한 책 한 권의 분량과 크기가 커서 휴대의 불편함이 따름.
- 이러한 점자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녹음 매체임. 녹음 매체의 장점은 일반도서의 내용을 음성 녹음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점자를 잘 알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임. 하지만 녹음 매체 또한 다른 형태의 정보 매체의 변환, 즉 일반도서에서 녹음으로의 변환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고와 제약이 따름.
- 컴퓨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비롯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로 인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음. 또한 컴퓨터 이용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보다 편리하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 제작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직접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은 다양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많은 정보를 소비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음²⁾(김재윤·김정환·김성철, 2013).

2. 시각장애인복지관

- 2) 정보화가 장애인 복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중 시각장애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신체 기능의 보조, 이동 장애의 극복(원격 서비스), 교육재활, 사회재활, 심리재활 등의 이용효과가 설명되고 있음(김재윤·김정환·김성철, 2013).

1)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개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기타로 분류함.
-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장애인복지관은 규모와 제공하는 서비스(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관의 설립 및 운영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시설사업 안내」의 규정에 따름.
- 특히, 사업안내의 규정에는 복지관 운영의 기본방침, 조직 및 직제, 직원의 고용 및 승급, 급여액, 회계, 사업의 내용, 후원금 집행방법 등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기에 실질적인 설립과 운영은 사업안내의 규정을 활용하고 있음.
- 2005년도 이후 사회복지사업 중 특히, 노인과 장애인 영역이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졌음.
- 이는 전반적인 관리 및 지원 주체가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각 지역의 사정에 적절한 지원과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건립 및 운영할 여건이 매우 어려워졌음.
- 특히, 최근 지자체의 재원을 담당하는 각종 세원 상태가 어려워짐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추가설치의 어려움은 물론,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욕구에 적절한 서비스 제공 또한 어려워질 것이고, 지자체별로 편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되고 있음(김정희, 2007).
-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주로 광역시에 몰려 있으며, 복지관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각 지부(지회)를 통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점자도서관 등의 서비스가 일부 제공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복지관처럼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구와 장애인 관련 시설(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포함)의 개소 수도 가장 많으며, 지리적 여건 또한 매우 넓기에 시각장애 특성을 감안한 복지관 1개소 운영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움.

2)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운영 현황

- 전국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법인을 구분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약 30%, 사단법인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인력 현황은 전국적으로 총 493명으로 평균 35.2명이며, 서울 소재 시각복지관의 경우 5개소 총 232명으로 평균 46.4명이었으며, 서울을 제외한 시각복지관의 경우 9개소 총 261명으로 평균 29명이었음.
- 서울 소재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인력이 그 외 시각장애인복지관보다 인력현황에 있어서 많이 앞서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인력이 많다는 것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의 총량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빈도와 구성비가 높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음.
- 서울을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 지방 중 경기도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숫자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력현황에 있어서는 서울지역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조직도(직제)는 대부분 관장, 사무국장,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업부장과 사회복지무원(공익)을 인력

으로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구성된 부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시설사업안내>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명칭은 상이하나 수행하는 업무는 대부분 대동소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총무기획(사무국, 운영지원 등), 상담, 사회재활, 정보지원, 직업재활, 조사연구팀 등 복지관 내 부서 구성은 일반적인 장애인복지관과 비슷하였으며, 시각장애의 특성을 감안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점자 및 보행 훈련, 점역(점서), 점자도서관, 음성 등 정보제공팀 등을 운영하고 있는 특징을 나타냈음.

3. 시각장애인복지 정책과 제도

-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책과 제도,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축되기보다는 일반 장애인복지의 내역과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음.
- 전체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 서비스 구축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 장애특성별로 약간의 분화되어 있다는 것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각장애인복지
 - 중앙차원(보건복지부 및 관련부처)의 정책과 제도, 서비스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교육비지원, 자립자금 대여, 의료비지원,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장애인의무고용 등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용 차량 등록세 및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공공시설 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 등이 있고,

민간기관의 자체운영 규정에 의한 것으로는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감면 및 면제, 전화요금 및 TV 수신료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시책이 실시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내용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재활 병의원 운영,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편의시설 설치 시민축진단(모니터링) 운영,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등이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운영과 관리는 2015년부터 중앙정부로 환원되었음.
- 결국,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제도, 서비스로 생활이동지원센터,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제도,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음.
-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제도 및 서비스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 장애인보조기구건강보험급여,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세금공제 및 면제,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통신 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 및 할인, 주택 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재활병의원, 주간기 보호시설, 장애인 체육관,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동지원서비스센터(장애인콜택시, 해피콜 등), 장애인정보화 교육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점자도서관, 정신보건센터, 특수학교(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 시설, 장애아동 보육시설 등을 들 수 있음.

Ⅲ. 조사결과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및 방법

○ 2018년 12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중 889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 조사는 2018년 1월 ~ 2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조사표를 활용한 1:1 개별면접 조사로 실시되었음.

- 표본설계는 2018년 12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을 모집단으로 표본집단에 대한 가중치 및 추정량 계산 후 적용하였음.

<표 3> 조사 개요

구분	조사내용
조사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장애인복지법」 상의 등록장애인 등 시각장애인
조사규모	889명
조사기간	2019년 1월 ~ 2월
조사방법	직접 방문에 의한 구조화된 설문조사표를 활용한 대면 조사

2) 조사내용

○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기관으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규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맹학교), 안마수련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점자도서관, 주간보호센터,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들 수 있음(양희택·조성재·황주연·백혜련·곽유나, 2014).

○ 시각장애인복지 정책과 제도, 서비스와 관련한 문제점들

- 첫째,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관점
- 둘째, 적절하지 않은 정책과 제도 설계
- 셋째, 활성화 되지 않은 직업재활 체계
- 넷째, 시각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복지시설 및 기관 등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경제적 부담 감경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시책 구현, 전문 인력의 배치 및 처우 개선, 민간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취업기회 확대 등을 통한 적절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주장(양희택·조성재·황주연·백혜련·곽유나(2014) 재인용).

- 조사 영역은 크게 6가지이며, 그 영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구성하였음.

〈표 4〉 조사 영역 및 내용

영역	조사 내용	문항 수
인적 사항	성별, 출생연도, 거주 지역, 장애 발생 시기, 장애등급, 장애인 인, 최종 학력, 주거형태	8문항
가구 정보 사항	총 가구원수, 소득 가구원, 주 수입원, 현재 결혼 상태, 수급자 대상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사회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 종류	11문항
일상생활 도움 및 어려움 관련 사항	일상생활 도움의 필요정도 및 도움제공자, 사회생활 도움의 필요정도 및 도움제공자, 안전 도움의 필요정도 및 도움제공자, 하루 일과, 한 해 동안의 어려움 내용 및 그에 따른 공적서비스 이용경험여부(10개 지표), 생활만족도(9개 지표)	10문항
이동편의성 및 시설 이용 관련 사항	평균 외출 횟수, 이동 수단, 독립보행 가능상태, 독립보행 도움 도구, 흰지팡이 등 이용경험 및 미이용 사유, 활동지원사 이용 및 미이용 사유, 시각장애인 복지기관 이용여부 및 알게된 경로, 월평균 이용횟수,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이용 및 고려사항, 이용희망시간, 확대해야 할 서비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용여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용 만족도(5개 지표), 기초재활교육 경험 및 교육기관(장소), 기초재활교육 기간, 기초재활교육의 도움정도, 기초재활교육 애로사항, 점차해독 가능 상태	24문항
건강 관련 사항	만성질환, 자살 생각, 신체활동, 우울감(11개 지표)	4문항
취업 관련 사항	현재 일의 유무 및 근무연수, 직업, 근무하는 곳, 직장 애로사항, 취업 유지로 필요한 부분,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유	6문항

2. 조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 성별

□ 본 연구의 응답자들 중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이 조사되었음.

○ 성별로 응답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54.5%인 482명이 응답하였고, 여성은 45.5%인 402명이 응답하였음.

- 단, 성별에 대해 무응답한 경우는 5명이었음.

- 2013년도 조사에서 남성이 59.8%, 여성이 40.2%로 응답하였고, 2014년 조사에서는 남성이 58.7%, 여성이 41.3%로 응답하였음.

〈표 5〉 응답자의 성별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남자	482	54.5
여자	402	45.5
합계	884	100.0

(2) 연령대

- 본 연구의 응답자들 중 노인계층이 청년계층보다 더 많이 조사되었음.
- 연령대별로 응답 현황을 살펴보면, 20대는 0.7%인 6명, 30대는 2.7%인 24명, 40대는 6.3%인 55명, 50대는 14.1%인 124명, 60대는 24.2%인 212명, 70대는 33.0%인 289명, 80대는 17.7%인 155명, 그리고 90대는 1.4%인 12명이 응답하였음.
 - 단, 연령(나이, 출생연도)에 무응답한 경우는 12명이었음.
 - 2013년도 조사에서는 60대 이상이 77.6%로 응답하였고, 2014년도 조사에서는 60대 이상이 36.6%로 응답하였음.

<표 6> 응답자의 연령대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20대	6	0.7
30대	24	2.7
40대	55	6.3
50대	124	14.1
60대	212	24.2
70대	289	33.0
80대	155	17.7
90대	12	1.4
합계	877	100.0

(3) 거주지역

-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 시각장애인의 수에 따라 응답 인원에서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음.
- 가평은 3.7%인 33명, 고양은 2.9%인 26명, 과천은 1.5%인 13명, 광명은 2.2%인 19명, 광주는 1.0%인 9명, 구리는 6.8%인 60명, 군포는 2.5%인 22명, 김포는 2.9%인 26명, 남양주는 3.7%인 33명, 동두천은 4.0%인 35명, 부천은 5.3%인 47명, 성남은 11.3%인 100명, 수원은 4.9%인 43명, 시흥은 1.2%인 11명, 안산은 3.9%인 34명, 안성은 2.6%인 23명, 안양은 2.7%인 24명, 양주는 4.1%인 36명, 양평은 1.7%인 15명, 여주는 1.8%인 16명, 연천은 2.7%인 24명, 오산은 5.4%인 48명, 용인은 2.0%인 18명, 의왕은 2.9%인 26명, 의정부는 3.5%인 31명, 이천은 2.4%인 21명, 파주는 1.1%인 10명, 평택은 2.9%인 26명, 포천은 2.2%인 26명, 하남은 2.0%인 18명, 그리고 화성은 1.9%인 17명이 조사되었음.
 - 단, 거주지역에 대해 무응답한 경우는 6명이었음.

<표 7> 응답자의 거주지역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범주	빈 도	구성비
가평	33	3.7	안양	24	2.7
고양	26	2.9	양주	36	4.1
과천	13	1.5	양평	15	1.7
광명	19	2.2	여주	16	1.8
광주	9	1.0	연천	24	2.7
구리	60	6.8	오산	48	5.4
군포	22	2.5	용인	18	2.0
김포	26	2.9	의왕	26	2.9
남양주	33	3.7	의정부	31	3.5
동두천	35	4.0	이천	21	2.4
부천	47	5.3	파주	10	1.1
성남	100	11.3	평택	26	2.9
수원	43	4.9	포천	19	2.2
시흥	11	1.2	하남	18	2.0
안산	34	3.9	화성	17	1.9
안성	23	2.6	합계	883	100.0

(4) 장애발생 시기

□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장애가 발생한 시기를 연령으로 계산해보면, 주로 성인 중에서도 중년층부터로 응답되었음.

○ 장애가 발생한 나이는 평균 34.45세(표준편차 24.496)이었으며, 선천성의 경우부터 가장 늦은 나이로는 85세에 이르렀음.

<표 8> 응답자의 장애 발생 시기

(단위: 명, %)

범주	사례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장애가 발생한 나이	859	0	85	34.45	24.496

주 : 0은 선천성의 경우를 의미함

(5) 장애등급

- 본 연구의 응답자들 중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 등급을 살펴보면, 장애 정도가 가장 심한 1급이 절반을 넘는 50.1%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애 정도가 가장 심하지 않은 6급이 21.4%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조사되었음.
- 1급은 50.1%인 442명, 2급은 5.8%인 51명, 3급은 8.2%인 72명, 4급은 8.3%인 73명, 5급은 6.1%인 54명, 그리고 6급은 21.4%인 189명이 응답하였음.
- 그리고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응답자는 2명(0.2%)이었음.
- 단, 장애등급에 대해 무응답한 경우는 6명이었음.

<표 9> 응답자의 장애등급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1급	442	50.1
2급	51	5.8
3급	72	8.2
4급	73	8.3
5급	54	6.1
6급	189	21.4
미등록	2	0.2
합계	883	100.0

(6) 장애원인

- 본 연구 응답자들의 장애원인을 살펴보면, 후천적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사고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약 80%에 이르는 경우가 후천적인 경우라고 응답하였음.
- 후천적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57.9%인 5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임신, 출산 시 포함)로 인한 경우는 19.5%인 171명에 해당하였음.
- 반면, 선천적인 경우는 15.5%인 136명이었으며, 원인불명의 경우는 7.1%인 62명에 해당하였음.
- 단, 장애원인에 대해 무응답한 경우는 13명이었음.

<표 10> 응답자의 장애원인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선천적	136	15.5
사고(임신, 출산시 포함)	171	19.5
후천적 질병	507	57.9
원인불명	62	7.1
합계	876	100.0

(7) 최종 학력

-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최종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 초등학교 > 중학교 학력 등의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세 가지 학력의 경우가 거의 약 80%에 이르는 응답을 차지하였음.
- 고등학교 학력은 31.4%인 2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학력은 25.3%인 223명, 중학교 학력은 19.2%인 169명이 응답하였음.
 - 무학인 경우는 9.8%인 86명이 응답하였음.
 - 반면, 고학력에 해당하는 전문(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학력의 경우는 각각 4.5%인 40명과 8.1%인 71명이 응답하였으며, 대학원 학력의 경우는 1.6%인 14명이 응답하였음.
 - 기타는 0.1%인 1명이 응답하였음.
- 단, 학력에 대해 무응답한 경우는 9명이었음.

<표 11> 응답자의 최종 학력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무학	86	9.8
초등학교 재학·중퇴·졸업	223	25.3
중학교 재학·중퇴·졸업	169	19.2
고등학교 재학·중퇴·졸업	276	31.4
전문대학 재학·중퇴·졸업	40	4.5
4년제 대학 재학·중퇴·졸업	71	8.1
대학원 재학·중퇴·졸업	14	1.6
기타	1	0.1
합계	880	100.0

(8) 주거형태

-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자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의 응답을 하였음.
- 자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53.0%인 4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세(반전세 포함)의 경우와 전세의 경우는 각각 21.2%인 182명과 16.6%인 142명이 응답하였음.
 - 정부지원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8.5%인 73명이었으며, 기타의 경우는 0.7%인 6명이 응답하였음.
- 단, 주거 형태에 무응답한 경우는 32명이었음.

<표 12> 응답자의 주거형태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자택	454	53.0
전세	142	16.6
월세(반전세 포함)	182	21.2
임대주택(정부지원)	73	8.5
기타	6	0.7
합계	857	100.0

2) 응답자의 가구 특성

(1) 가구원 수

가. 가족의 수 및 소득 가구원

- 가구의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평균 2명으로 보통 1명의 다른 가족 구성원과 살고 있고, 이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1명보다 작은 0.8명 정도에 이르고 있어 거의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가구원의 수는 응답자 본인을 포함하여 평균 2.18명(표준편차 1.272)이었으며, 최소 가구원 수는 1명으로 나홀로 또는 1인 가구로서 전체 응답자 중 36.2%(32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가구원 수가 가장 많은 최대의 경우는 7명이었음.
-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수는 평균 0.85명(표준편차 .882)으로 조사되었는데, 한 명의 소득도 없는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무소득 가구의 경우는 38.8%(293명)로 비교적 높은 수치로 나타났음. 반면, 가구원 중 5명이나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있다고 한 경우가 최대치로 나타났음.

<표 13> 응답자 가구의 가족 인원 및 소득 가구원

(단위: 명)

범주	사례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구원 수	887	1*	7	2.18	1.272
소득 가구원 수	756	0	5	0.85	.882

주 : 응답자 본인을 포함한 인원이며, *의 “1”은 나홀로 가구 또는 1인 가구를 의미함.

나. 가구원 중 주 수입원

- 가구원 중 주 수입원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본인인 경우가 약 10명 중 2-3명에 해당하였고, 소득이 없어 정부보조(연금 포함)로 소득이 유지되는 경우가 가장 높은 약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정부지원이나 연금 등 공적이전을 통한 가구수입이 주 원천인 경우는 28.8%(23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주 수입원으로서 시각장애를 가진 본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26.0%(215명)이었고, 사적이전에 해당하는 자녀와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16.6%(137명)과 12.6%(104명)이었으며, 또한 부모와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1.3%(11명)과 0.5%(4명)이었음.
- 그런데, 이러한 본인의 소득활동 또는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사적인 전이나 정부지원의 공적이전 등을 포함한 어떠한 수입도 없는 경우가 14.0%(116명)으로 조사되었음.

<표 14> 가구의 주 수입원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본인	215	26.0
배우자	104	12.6
부모	11	1.3
자녀	137	16.6
형제·자매	4	.5
정부지원(연금 포함)	238	28.8
기타	2	.2
없음	116	14.0
합계	827	100.0

(2) 결혼 상태

- 현재 배우자의 유무 등에 대해서 배우자가 현재 있는 경우는 약 10명 중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 결혼이나 동거 등으로 현재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경우는 10.9%(94명)로 조사되었음.
- 반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인 경우는 50.5%(436명)로 나타났고, 사별/이혼/별거의 경우는 38.6%(333명)로 조사되었음.

<표 15> 결혼 및 배우자 유무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유배우(결혼/동거)	94	10.9
미혼	436	50.5
사별/이혼/별거	333	38.6
합계	863	100.0

(3)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

-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약 10명 중 3명에 이르는 응답자가 일반수급가구가거나 조건부수급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급 가구가 아닌 경우는 64.5%(555명)로 조사되었음.
- 일반수급 가구(의료·교육·자활특례 제외)는 23.8%(205명)로, 그리고 조건부수급 가구(차상위계층 포함)는 8.8%(76명)로 조사되었음.
- 의료·교육·자활특례 가구는 2.8%(24명)로 조사되었음.

<표 16> 가구의 국기초 수급여부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수급가구가 아님	555	64.5
일반수급가구(의료·교육·자활특례 제외)	205	23.8
조건부수급가구(차상위계층 포함)	76	8.8
의료·교육·자활특례가구	24	2.8
합계	860	100.0

(4) 월평균 가구소득

-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을 살펴보면, 평균 100만원 미만이 전체 응답자 중 50% 이상을 넘고 있어, 경기도시각장애인 2명 중 최소 1명 이상이 최저생계비(2018년도 1인 가구 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음.
-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의 경우는 30.8%(243명)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의 경우가 26.1%(206명)으로 그 다음 순으로 많이 조사되었음.
-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의 경우는 14.1%(111명)으로,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의 경우는 7.9%(62명)으로, 그리고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의 경우는 10.0%(79명)으로 조사되었음.

<표 17> 가구의 월평균 소득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50만원 미만	243	30.8
50-100만원 미만	206	26.1
100-150만원 미만	111	14.1
150-200만원 미만	62	7.9
200-300만원 미만	79	10.0
300-400만원 미만	39	4.9
400-500만원 미만	15	1.9
500-600만원 미만	18	2.3
600-700만원 미만	6	.8
700-1000만원 미만	6	.8
1000만원 이상	4	.5
합계	789	100.0

주: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세급공제 이전 금액임.

- 2018년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우리나라 가구별 생계급여를 나타내는 월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1,003,263만원, 2인 가구의 경우 1,708,258만원, 3인 가구의 경우 2,209,890만원, 그리고 4인 가구의 경우 2,711,521만원 이었음.

<표 18> 2018년도 최저생계비 현황

(단위: 원)

가구	1인	2인	3인	4인
월최저생계비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출처 : 보건복지부(2018)

(5) 사회보험 가입 현황

가. 국민연금

-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는 약 40% 정도에 불과하여 비장애인 등 전체 국민 현황([그림 1] 참조)과 비교하여 낮은 가입률을 보였음.
-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비교적 높은 55.4%(462명)로 조사되었으며, 심지어 가입 여부를 모르겠다고 한 경우도 5.4%(45명)로 조사되었음.
-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39.2%인 327명에 대해 연금의 종류를 다시 조사한 결과, 약 응답자 절반에 해당하는 51.4%가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었으며, 43.2%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였음. 그리고 불과 5.4%만이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 해당하였음.

<표 19>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종류

(단위: 명, %)

범주	빈도	구성비	범주	빈도	구성비
가입되어 있음	327	39.2	▶ 국민연금_직장가입자	120	43.2
가입되어 있지 않음	462	55.4	국민연금_지역가입자	143	51.4
가입 여부를 모르겠음	45	5.4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15	5.4
합계	834	100.0	합계	278*	100.0

주 * : 327명 중 49명 무응답

나. 건강보험

- 사회보험 중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가입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약 60%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비장애인 등 전체 국민 현황([그림 1] 참조)과 비교하면 낮은 가입률을 보였음.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61.4%(521명)이었고, 반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34.2%(290명)이었으며, 심지어 가입여부를 모르겠다고 한 경우는 4.5%(38명)으로 조사되었음.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종류에 대해 다시 물어본 결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각각 35.4%와 34.8%로 주로 차지하였으며, 의료수급권자는 15.2%에 해당하였으며, 직장가입피부양자는 14.6%로 나타났음.

<표 20>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종류

(단위: 명, %)

범주	빈도	구성비	범주	빈도	구성비
가입되어 있음	521	61.4	▶ 직장가입자	171	34.8
가입되어 있지 않음	290	34.2	지역가입자	174	35.4
가입 여부를 모르겠음	38	4.5	의료수급권자	75	15.2
			직장가입피부양자	72	14.6
합계	849	100.0	합계	492	100.0

주 * : 521명 중 29명 무응답

다. 고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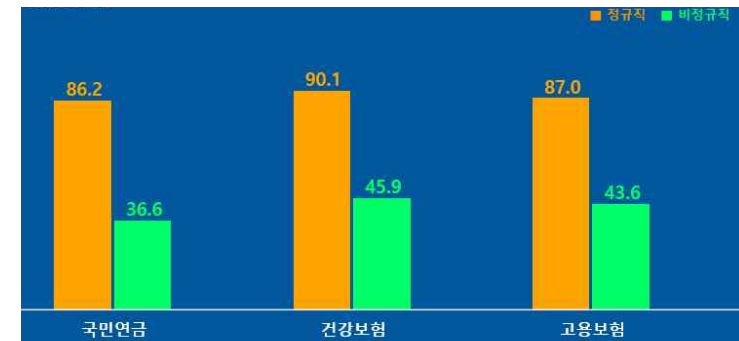
- 사회보험 중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이 비교적 가장 적게 가입된 것으로는 고용보험이었는데, 10명 중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특히 비장애인 등 전체 국민 현황([그림 1] 참조)과 비교하면 더욱 낮은 가입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12.9%(99명)이었던 반면,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80.4%(616명)이었으며, 심지어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6.7%(51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였음.

〈표 21〉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종류

(단위: 명, %)

범주	빈도	구성비
가입되어 있음	99	12.9
가입되어 있지 않음	616	80.4
가입 여부를 모르겠음	51	6.7
합계	766	100.0

-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경우 약 86%에서 90% 사이이며, 비정규직의 경우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약 36%에서 46% 사이로 조사되고 있음.
- 건강보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국민연금의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이는 것이 고용보험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 일자리(직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영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4] 우리나라 사회보험 가입률

* 기준: 2018년 8월, 단위: %

* 출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2018),
https://dashboard.jobs.go.kr/index/summary?pg_id=PSCT030600&data2=SCT030600&ct_type=run

3) 일상생활 도움 및 어려움 관련 사항

<표 22> 일상생활 도움 필요성 및 제공자 현황

(단위: 명, %)

(1) 일상생활 도움 필요성 및 제공자 현황

□ 신변처리, 가정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서는 약 80%에 이르는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현재는 이러한 도움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 이용과 가족구성원이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살펴본 결과, 도움이 매우 필요함은 45.9%(407명), 도움이 조금 필요함은 23.7%(210명), 도움이 필요함은 8.4%(74명)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 약 80% 가까운 수치에 이르렀으며, 도움이 필요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22.0%(195명)로 나타났다.

○ 이러한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들이 대체로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는가를 재차 응답하도록 한 결과, 가장 많은 46.8%(278명)가 사회복지제도 이용(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이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구성원으로 23.4%(139명)의 비교적 높은 응답을 보였음.

○ 그러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18.4%(109명)로 약 10명 중 2명에 가까운 사람으로 나타났다.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시각장애인 기관(시설)은 7.6%(45명), 이웃주민(종교인 포함)은 3.0%, 그리고 개인 돈으로 서비스 제공인 이용은 0.5%(3명)로 조사되었음.

범주	빈도	구성비
← 도움이 매우 필요함	407	45.9
← 도움이 조금 필요함	210	23.7
← 도움이 필요함	74	8.4
→ 도움이 필요 없음	195	22.0
합계	886	100.0

<도움의 필요 정도>

범주	빈도	구성비
사회복지제도 이용(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278	46.8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등)	139	23.4
이웃주민(종교인 포함)	18	3.0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시각장애인 기관(시설)	45	7.6
개인 돈으로 서비스 제공인 이용	3	.5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109	18.4
기타	2	.3
합계	594	100.0

<일상생활의 도움 제공자>

(2) 사회생활 도움 필요성 및 제공자 현황

-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 4배가 컸고, 이러한 필요한 정도에서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제공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제도 이용이나 가족구성원이 비교적 높았으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약 20% 정도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음.
- 직장생활, 학업,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활동 등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해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고 한 경우는 47.1%(412명),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고 한 경우는 21.5%(188명),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는 8.8%(77명)으로 응답해 전체 응답자 중 77.0%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다시 대체로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는가를 재질문한 결과, 46.5%(270명)가 사회복지제도(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를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이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등)과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시각장애인 기관(시설)으로 각각 18.2%(106명)과 13.6%(79명)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17.2%(100명)나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이웃주민(종교인 포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는 3.3%(19명), 개인 돈으로 서비스 제공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0.9%(5명), 그리고 기타의 경우는 0.3%(2명)으로 나타났음.

〈표 23〉 사회생활 도움 필요성 및 제공자 현황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 도움이 매우 필요함	412	47.1
← 도움이 조금 필요함	188	21.5
← 도움이 필요함	77	8.8
→ 도움이 필요 없음	198	22.6
합계	875	100.0

<도움의 필요 정도>

범주	빈 도	구성비
사회복지제도 이용(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270	46.5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등)	106	18.2
이웃주민(종교인 포함)	19	3.3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시각장애인 기관(시설)	79	13.6
개인 돈으로 서비스 제공인 이용	5	.9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100	17.2
기타	2	.3
합계	581	100.0

<도움 제공자>

(3) 안전 위협 시 도움 필요성 및 제공자 현황

- 안전을 위협 받거나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0%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약 10명 중 3명이 어려움에 처할 때 정작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시각장애인 본인이 안전을 위협 받거나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4.9%이었으며, 반대로 받을 수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17.3%(150명)과 7.6%(66명) 이어서 약 30%에 이르는 경기도 시각장애인이 위험이나 곤경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체로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 재조사를 한 결과, 이전의 두 질문과는 달리 사회제도보다는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등)가 4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제도(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를 이용하는 경우는 31.4%(195명), 그리고 119 나 112 등 국가기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18.6%(116명)으로 나타났음.
- 실제로 도움이 필요함에도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0.3%(2명)에 불과하였음.
- 이웃주민(종교인 포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는 2.7%(17명), 개인 돈으로 서비스 제공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0.3%(2명), 그리고 기타의 경우는 0.2%(1명)으로 나타났음.

<표 24> 안전 위협 시 도움 필요성 및 제공자 현황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받을 수 있음	649	74.9
받을 수 없음	150	17.3
잘 모르겠음	66	7.6
기타	1	.1
합계	866	100.0

<도움을 받을 가능성>

범주	빈 도	구성비
사회복지제도 이용(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195	31.4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등)	254	40.8
119 나 112 등 국가기관(시설)	116	18.6
이웃주민(종교인 포함)	17	2.7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시각장애인 기관(시설)	35	5.6
개인 돈으로 서비스 제공인 이용	2	.3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2	.3
기타	1	.2
	622	100.0

<도움 제공자>

(4) 하루 일과 활동 상황

-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으로 첫 번째로는 여가 및 문화 생활이었던 반면, 두 번째로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경기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하루 일과를 유익하게 지내거나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음.
- 응답자의 25.5%(220명)가 하루 일과 중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경기도 시각장애인이 하루 일과를 유익하게 또는 즐겁게 보내지 않거나 지루하게 지내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었음.
 - 여가 및 문화생활(종교 포함)을 주로 하고 있다는 응답은 39.6%(341명)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교육(훈련 및 수강 포함)으로 15.9%(137명)를 차지하였음.
 - 자원봉사활동은 2.8%, 가사(집에 있음)는 2.2%, 협회나 지회 활동은 2.1%, 그리고 병원 또는 운동은 3.0%로 조사되었음.

〈표 25〉 하루 일과의 활동 상황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근무	73	8.5
교육(훈련 및 수강 포함)	137	15.9
여가 및 문화생활(종교 포함)	341	39.6
자원봉사활동	24	2.8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아니함	220	25.5
가사(집에 있음)	19	2.2
협회, 지회 활동	18	2.1
병원 또는 운동	26	3.0
기타	4	.5
합계	862	100.0

(5) 생활의 어려움 정도 및 공적 서비스 이용 경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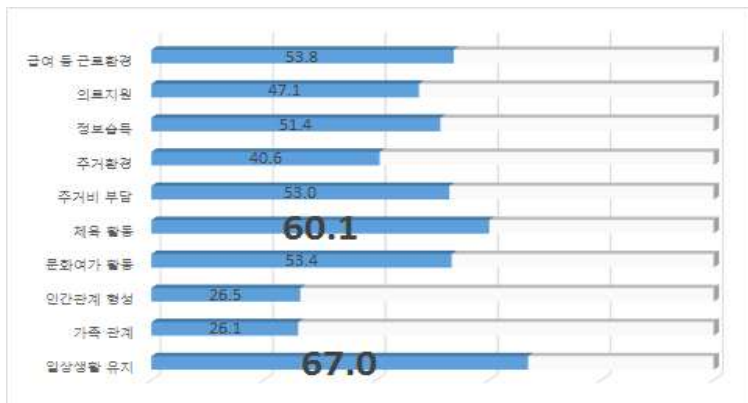
-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일상생활 유지와 체육 활동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어려움이 있었을 경우 공적 지원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여부에서 모든 영역에서 평균적으로 이용률이 40% 이하로 나타났다.
- 10개 영역에 대한 2018년도 1년 동안 어려움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일상생활 유지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 경우는 67.0%가, 체육 활동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 경우는 60.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 적은 급여 등 근로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경우는 53.8%, 문화여가 활동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경우는 53.4%, 주거비 부담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경우는 53.0%, 그리고 정보습득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경우는 51.4%로 조사되었음.
 - 가족관계의 어려움(26.1%),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 관계 형성의 어려움(26.5%), 열악한 주거환경의 어려움(40.6%), 그리고 병원 등의 의료지원에 대한 어려움/환경(47.1%)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음.
 - 10개 영역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경우 해당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공적 지원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여부에서는 일상생활 유지에서 39.6%로 가장 높게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 중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이용률을 보였음.
 -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지원이나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높게 응답된 영역은 가족관계의 어려움(90.5%),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 관계 형성의 어려움(85.7%), 열악한 주거환경의 어려움(83.0%), 적은 급여 등 근로환경에 대한 어려움(80.3%), 그리고 주거비

부담과 관련한 어려움(73.4%)과 정보습득에 대한 어려움(73.1%)이었음.

<표 26> 생활의 어려움 정도 및 공적 서비스 이용 경험여부

(단위: 명, %)

범주	어려움의 경험 유무		어려움에 대한 공적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어렵지 않았다	어려웠다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 중	이용해 본 적 없음
가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288(33.0)	586(67.0)	269(39.6)	410(60.4)
나 가족 관계의 어려움	633(73.9)	224(26.1)	53(9.5)	506(90.5)
다 친척 이웃 소속집단과 관계 형성의 어려움	634(73.5)	228(26.5)	80(14.3)	480(85.7)
라 문화여가 활동과 관련한 어려움	401(46.6)	459(53.4)	220(34.8)	413(65.2)
마 체육 활동과 관련한 어려움	343(39.9)	517(60.1)	206(32.2)	434(67.8)
바 주거비 부담과 관련한 어려움	404(47.0)	456(53.0)	162(26.6)	448(73.4)
사 열악한 주거환경의 어려움	510(59.4)	348(40.6)	99(17.0)	483(83.0)
아 정보습득에 대한 어려움	417(48.6)	441(51.4)	162(26.9)	440(73.1)
자 병원 등의 의료자원에 대한 어려움/환경	453(52.9)	403(47.1)	220(36.1)	390(63.9)
차 적은 급여 등 근로환경에 대한 어려움	381(46.2)	443(53.8)	116(19.7)	473(80.3)



[그림 5] 생활의 어려움 정도

(6) 생활만족도

□ 건강 등 9개 영역에 대한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은 자녀와의 관계(평균 3.85점), 배우자와의 관계(평균 3.84점), 사회적 친분관계(평균 3.75점), 가족 관계(평균 3.74점) 등 대부분 가족에 관한 사항에서는 만족도가 높았으나, 본인 및 가족의 수입(평균 2.38점), 본인의 건강(평균 2.69점), 직업(평균 2.7점)에서는 만족도가 낮았음.

○ 본인 및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38점(표준편차 1.104)으로 매우 낮았는데, ‘매우 불만족’(27.7%)과 ‘대체로 불만족’(25.2%)이 어느 영역보다 가장 높게 응답되어 부정적 평가를 하였음.

<표 27> 생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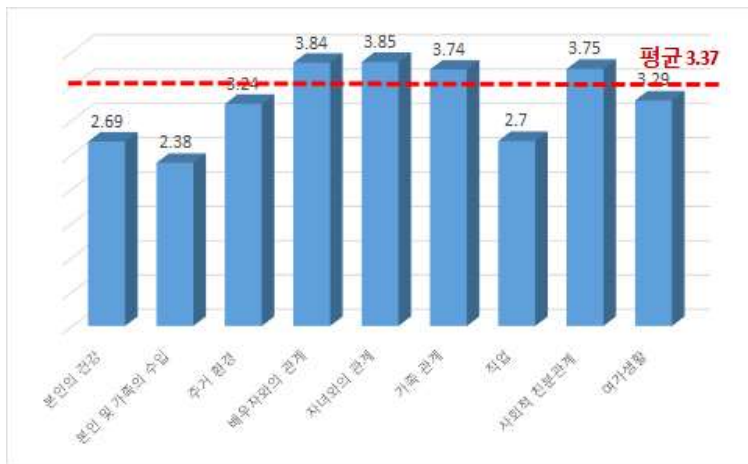
(단위: 명, %)

범주	만족 정도						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해당없음	
가 본인의 건강	74 (8.4)	139 (15.8)	281 (31.9)	211 (24.0)	175 (19.9)	×	880 (100.0)
나 본인 및 가족의 수입	26 (3.0)	108 (12.4)	275 (31.6)	219 (25.2)	241 (27.7)	×	869 (100.0)
다 주거 환경	117 (13.4)	259 (29.7)	291 (33.3)	130 (14.9)	76 (8.7)	×	873 (100.0)
라 배우자와의 관계(배우자가 있는 경우)	157 (19.1)	153 (18.6)	125 (15.2)	23 (2.8)	21 (2.5)	345 (41.9)	824 (100.0)
마 자녀와의 관계(자녀가 있는 경우)	228 (26.8)	221 (25.9)	164 (19.2)	40 (4.7)	28 (3.3)	171 (20.1)	852 (100.0)
바 가족 관계	257 (30.1)	266 (31.1)	230 (26.9)	56 (6.6)	45 (5.3)	×	854 (100.0)
사 직업	68 (8.8)	91 (11.7)	350 (45.2)	76 (9.8)	190 (24.5)	×	775 (100.0)
아 사회적 친분관계	249 (29.0)	272 (31.7)	245 (28.6)	60 (7.0)	32 (3.7)	×	858 (100.0)
차 여가생활	154 (17.8)	216 (24.9)	307 (35.4)	107 (12.3)	83 (9.6)	×	867 (100.0)

〈표 28〉 생활만족도 평균값

(단위: 명, 점)

범주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 본인의 건강	880	1	5	2.69	1.198
나. 본인 및 가족의 수입	869	1	5	2.38	1.104
다. 주거 환경	873	1	5	3.24	1.128
라. 배우자와의 관계(배우자가 있는 경우)	479	1	5	3.84	1.073
마. 자녀와의 관계(자녀가 있는 경우)	681	1	5	3.85	1.077
바. 가족 관계	854	1	5	3.74	1.114
사. 직업	775	1	5	2.7	1.209
아. 사회적 친분관계	858	1	5	3.75	1.064
자. 여가생활	867	1	5	3.29	1.176
합계	397	1.2	5	3.37	0.702



[그림 6] 생활만족도 평균값

4) 이동편의성 및 시설 이용 관련 사항

(1) 평균 주별 외출 횟수

□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은 일주일 중 평균 4.3일(표준편차 1.98) 외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외출을 못하는 편은 아닌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빈도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주 5회 외출이 26.4%(232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평균 주 7회로 매일 외출한다는 응답이 18.8%(165명)로 높게 나타났고, 평균 3회와 2회 외출한다는 응답이 각각 13.3%(117명)과 13.1%(115명)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 한 번도 외출하지 않는 응답은 2.1%(18명)로 비교적 낮게 응답되었음.

〈표 29〉 평균 주당 외출 횟수

(단위: 명, %)

범주	빈도	구성비	평균(표준편차)
한 번도 외출하지 않음	18	2.1	4.3 (1.98)
평균 주 1회 외출	71	8.1	
평균 주 2회 외출	115	13.1	
평균 주 3회 외출	117	13.3	
평균 주 4회 외출	87	9.9	
평균 주 5회 외출	232	26.4	
평균 주 6회 외출	73	8.3	
평균 주 7회 외출	165	18.8	
합계	878	100.0	

(2) 외출 시 주된 이동 수단

-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은 외출 시 주로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이 대중교통 중 버스와 지하철이었음.
- 외출 시 주된 이동 수단으로서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41.0%(301명)로 나타나 10명 중 최소 4명 이상이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이 대중교통으로서 버스(19.6%)와 지하철(16.6%)로 약 35% 이상을 차지하였음.
- 활동지원사 차량이나 셔틀버스는 각각 9.4%(69명), 5.6%(41명)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표 30> 외출 시 주된 이동 수단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대중교통-버스	144	19.6
대중교통-지하철	122	16.6
대중교통-일반택시	14	1.9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301	41.0
셔틀버스	41	5.6
활동지원사 차량	69	9.4
기타	43	5.9
합계	7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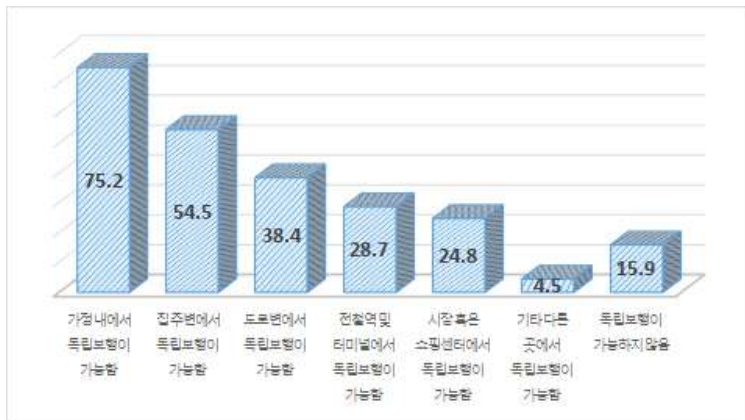
(3) 독립보행 가능 상태

-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은 가정 내에서 또는 집 주변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응답자 876명 중 가정 내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는 75.2%(659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으며, 집 주변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4.5%(477명)가 응답하여 그 다음을 차지하였음. 이처럼 대부분 가정 내와 그 인근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 중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도로변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876명 대비 38.4%(336명), 전철역 및 터미널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한 경우 또는 시장 혹은 쇼핑센터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대비 28.7%와 24.8%로 모두 약 3명 이내만이 가능하였고, 심지어 최소 1명 이상은 독립보행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1> 독립보행 가능여부 상태(복수응답)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가정 내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함	659	31.1
집 주변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함	477	22.5
도로변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함	336	15.9
전철역 및 터미널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함	251	11.9
시장 혹은 쇼핑센터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함	217	10.2
기타 다른 곳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함	39	1.8
독립보행이 가능하지 않음	139	6.6
합계	2,118	100.0



[그림 7] 독립보행이 가능한 경우의 대비율

주: 응답자 876명에 대한 가능한 경우를 비율(%)로 나타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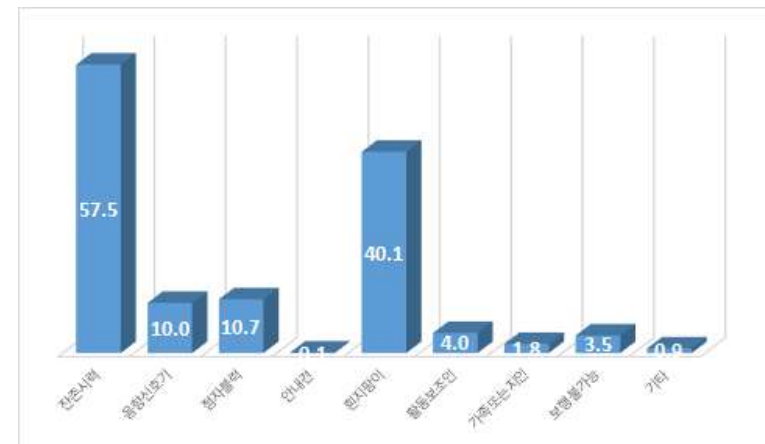
(4) 독립보행 시 도움 도구

- 독립보행 시 도움이 되는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 잔존시력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흰지팡이 이었음.
- 잔존시력으로 독립보행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769명 중 약 2명을 조금 넘는 442명(57.5%)이, 그 다음으로는 흰지팡이로 독립보행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 대비 40.1%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음향신호기와 점자블록은 1명 정도에 불과한 10.0%와 10.7% 이었고, 그 이외의 사항들은 매우 낮은 수치에 불과하였음.
-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는 3.5%(27명)로 조사되었음.

<표 32> 독립보행 시 도움 도구(복수응답)

(단위: 명, %)

범주	빈도	구성비
잔존시력	442	44.7
음향신호기	77	7.8
점자블록	82	8.3
안내견	1	0.1
흰지팡이	308	31.2
활동지원사	31	3.1
가족 또는 지인	14	1.4
보행 불가능	27	2.7
기타	7	0.7
합계	988	100.0



[그림 8] 독립 보행 시 도움을 받는다고 한 경우의 대비율

주: 응답자 769명에 대한 가능한 경우를 비율(%)로 나타낸 것임

(5) 독립보행 시 흰지팡이 또는 편의시설 이용경험

- 독립보행 시 실제로 흰지팡이나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찾아간 경험이 있는 경기도 시각장애인은 약 4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실제로 흰지팡이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 중 거의 매일 이용함은 21.7%(187명)로 가장 많았고, 주 1~2회 이용함 또는 월 1~2회 이용함은 각각 7.8%(67명) 또는 2.7%(23명)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가끔 이용함도 13.5%(116명)로 응답되었음.
- 그러나 독립보행 시 흰지팡이 또는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찾아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54.4%(469명)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 이처럼 독립보행 시 흰지팡이나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시 질의한 결과, 설치는 되어 있지만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27.0%, 그리고 편의시설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가 17.5%로 나타났고, 기타 의견이 가장 높은 45.0%를 차지하였음.
- ‘기타’ 의견으로는 “도우미 필요, 독립보행 불가, 무서워서, 배우지 못해서, 불필요함” 등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표 33> 독립보행 시 흰지팡이 또는 편의시설 이용경험 및 미이용 시 사유

(단위: 명, %)

범주	빈도	구성비
거의 매일 이용함	187	21.7
주 1~2회 이용함	67	7.8
월 1~2회 이용함	23	2.7
가끔 이용함	116	13.5
이용하지 않음	469	54.4
합계	862	100.0

<독립보행 시 흰지팡이 등 이용경험>

⇒

범주	빈도	구성비
잘못된 설치로 인하여	12	2.9
설치는 되어 있지만 필요성을 못 느껴서	111	27.0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18	4.4
주변 시선이 싫어서	13	3.2
편의시설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72	17.5
기타	185	45.0
합계	411	100.0

<미이용 시 사유>

(6)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하지 않고자 하는 이유

- ☐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에 대해 경기도 시각장애인은 약 60% 정도가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었음.
- 현재 이용하고 있음은 37.1%(325명)로 나타났고, 앞으로 이용할 예정임도 23.3%(204명)로 나타나 전체 61.4%가 이용 또는 이용할 의사가 있었음.
- 그러나 앞으로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 39.7%(348명)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혼자서 독립보행이 가능해서(36.7%)로 가장 높았고, 연령 또는 장애등급 제한 때문(21.6%), 그리고 경제적 부담 때문(19.4%)으로 나타났음.
- ‘기타’(12.3%)에서는 “가족, 요양보호사 이용”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표 34>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하지 않고자 하는 이유

(단위: 명, %)

범주	빈도	구성비
이용하고 있음	325	37.1
앞으로 이용 예정임	204	23.3
앞으로도 이용하지 않을 예정임	348	39.7
합계	877	100.0

⇒ <미이용 의사 시 사유>

범주	빈도	구성비
불편해서	15	4.6
혼자서 독립보행이 가능해서	119	36.7
경제적 부담 때문에	63	19.4
자랑사건이 충분하지 않아서	0	.0
가족들이 싫어해서	0	.0
활동지원서비스를 잘 몰라서	17	5.2
연령 또는 등급 제한	70	21.6
기타	40	12.3
합계	324	100.0

<활동지원사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의사>

(7) 시각장애인복지기관(시설) 이용 경험여부 및 알게 된 경로

- ☐ 2018년 한 해 동안 경기도 시각장애인들 중 최소한 10명 중 8명이 시각장애인 복지기관(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1년 동안 이용했다는 응답은 84.5%(739명)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15.5%(136명) 보다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그리고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된 경로를 다시 질의한 결과, 지인/친구/이웃 소개가 가장 많은 44.1%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단체(협회)가 35.5%로 나타나 대부분 이 두 경로를 통해 시각장애인 복지기관(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5> 연간 시각장애인복지기관(시설) 이용 경험여부 및 알게 된 경로

(단위: 명, %)

범주	빈도	구성비
있다	739	84.5
없다	136	15.5
합계	875	100.0

⇒ <이용 시 알게 된 경로>

범주	빈도	구성비
TV, 라디오, 뉴스, 신문 등	13	1.9
넓은 마을/사서함	10	1.4
장애인단체(협회)	248	35.5
장애인복지관	47	6.7
지인/친구/이웃 소개	308	44.1
관공서(시청/주민센터)	50	7.2
기타	23	3.3
합계	699	100.0

<이용 경험여부>

- 시각장애인의 경기도 거주지역을 복지관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 유형화했을 때 30분 이내의 지자체 거주지역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데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30분 이내로 이동시간이 걸리는 지자체(지역1 유형)지역에서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전체 이용률과 비교해 더 높은 이용률을 보였음.
 - 집으로부터 시각장애인복지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60분 이상 걸리는 지역(지역3 유형)과 30분에서 60분 이내까지 걸리는 지역(지역2 유형)은 전체 평균보다는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두 지역 간에서도 차이가 있었음.
 - 지역2 유형이 지역3 유형보다 더 이용률이 낮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서울시 근교의 지역에서 사는 시각장애인이 복지관 서비스를 서울시 등으로 오히려 이용하고, 서울에서 먼 지역에서 오히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더 이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될 수 있음.

〈표 36〉 거주 지역별에 따른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여부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이용 여부		합계	$\chi^2(p)$
		이용	미이용		
지역 유형	지역1	229 (95.8)	10 (4.2)	239 (100.0)	35.801***(.000)
	지역2	165 (76.4)	51 (23.6)	216 (100.0)	
	지역3	341 (82.4)	73 (17.6)	414 (100.0)	
합계		735 (84.6)	134 (15.4)	869 (100.0)	

* $p<.05$, ** $p<.01$, *** $p<.001$.

주 : 지역유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했는데, 지역1은 시각장애인복지관까지 30분 이내의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역2는 30분에서 60분 내외의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역3은 60분 이상의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경우로 기준을 정해 분류하였음

- 또한, 시각장애인 복지기관(시설)을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해 이번 2018년 한 해 동안 한달 평균 얼마나 이용했는가를 조사한 결과, 기관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음.
-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중 지회가 가장 월평균 이용 횟수가 많았는데, 월평균 11회 이상이 가장 높은 35.0%(225명)를 차지하였고, 시각장애인 중 절반 이상이 월평균 8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시각장애인절반 이상이 월평균 2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월평균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27.3%에 이르고 있음.
 - 시각장애인연합회 중 생활이동지원센터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60%가 월평균 4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22.2%에 이르고 있음.

〈표 37〉 시설 유형별 월평균 이용 횟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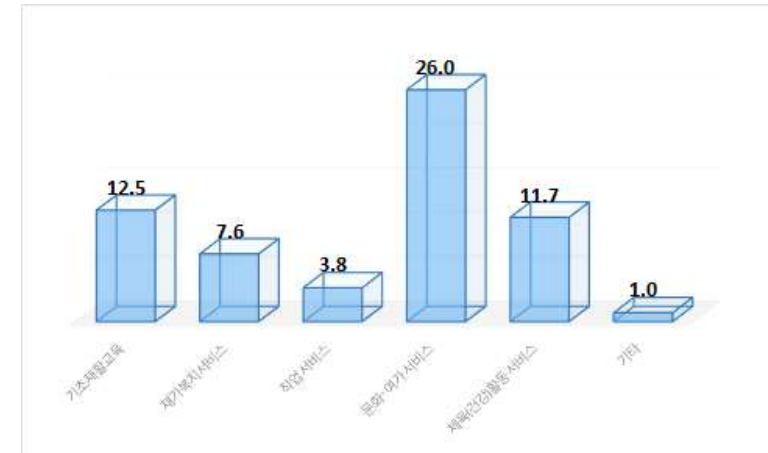
범주	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연합회-지회		시각장애인연합회-생활이동지원센터		기타	
월평균 0회	68	27.3	21	3.3	54	22.2	69	68.3
월평균 1회	45	18.1	75	11.7	16	6.6	3	3.0
월평균 2회	21	8.4	60	9.3	17	7.0	2	2.0
월평균 3회	10	4.0	33	5.1	11	4.5	2	2.0
월평균 4회	23	9.2	71	11.0	26	10.7	5	5.0
월평균 5회	8	3.2	22	3.4	11	4.5	2	2.0
월평균 6회	6	2.4	17	2.6	7	2.9	0	.0
월평균 7회	4	1.6	4	.6	4	1.6	2	2.0
월평균 8회	16	6.4	91	14.2	26	10.7	5	5.0
월평균 9회	0	.0	1	.2	1	.4	0	.0
월평균 10회	9	3.6	23	3.6	18	7.4	1	1.0
월평균 11회 이상	39	15.7	225	35.0	52	21.4	10	9.9
합계	249	100.0	643	100.0	243	100.0	101	100.0

(8)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이용 종류 및 미이용 시 사유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가장 많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는 문화·여가서비스인 것으로, 그 다음으로는 기초재활교육과 체육(건강) 활동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여가 서비스의 경우 응답자 711명 중 185명이 이용한다고 하여 이용률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재활교육(점자, 일상생활, 보행, 정보화 등)의 경우 10.8%의 이용률과 체육(건강)활동 서비스의 경우 10.1%의 이용률을 보였음. 재가복지서비스(난방비, 밀반찬, 후원 등)의 경우 6.5%와 직업 서비스(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경우 3.3%의 이용률을 각각 보였음.

- 다만, 받은 적 없음은 전체 응답의 구성비로 살펴보았을 때 46.1%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는다고 한 경우의 대비율
주: 응답자 711명에 대한 복지관 서비스 이용한 경우를 비율(%)로 나타낸 것임

<표 38>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이용 종류(복수응답)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기초재활교육(점자, 일상생활, 보행, 정보화 등)	89	10.8
재가복지서비스(난방비, 밀반찬, 후원 등)	54	6.5
직업 서비스(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27	3.3
문화·여가 서비스	185	22.4
체육(건강)활동 서비스	83	10.1
받은 적 없음	380	46.1
기타	7	0.8
합계	825	100.0

(9)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 시 고려 사항

-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접근성(교통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접근성(교통편)은 전체 응답 중 71.9%(441명)을 차지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으로 12.9%(79명)를 차지해 두 번째로 고려하는 요인이었음.
- 편의시설은 4.7%(29명), 부대시설은 3.3%(20명), 그리고 이용시간과 안내인·정보는 각각 2.3%(14명)과 2.0%(12명)으로 조사되었음.
- 기타는 2.9%(18명)의 다른 의견이 있었음.

<표 39>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 시 고려 사항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접근성(교통편)	441	71.9
부대시설(식당, 헬스장 등)	20	3.3
안내인·정보	12	2.0
편의시설(점자유도블럭, 촉지도, 음성유도기 등)	29	4.7
프로그램의 다양성	79	12.9
이용시간	14	2.3
기타	18	2.9
합계	6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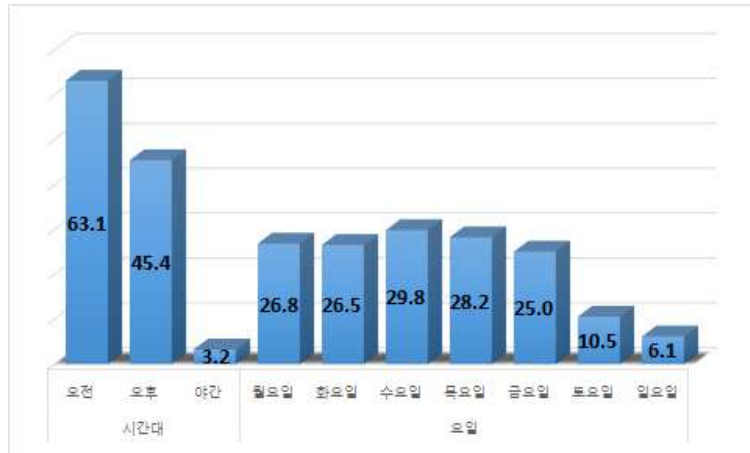
(10)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하고자 할 때 희망 시간

-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 희망하는 시간에서는 시간대는 오전이 월등히 많았으며, 요일에서는 수요일 > 목요일 > 월요일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많았음.
- 이용 희망 시간대에서는 오전의 경우 전체 응답자(593명) 대비 63.1%(374명)로 절반 이상을 훨씬 넘었으며, 오후의 경우 45.4%(269명)를 차지하였고, 야간의 경우 3.2%(19명)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음.
- 이용 희망 요일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모두 약 25%에서 30% 이내로 고르게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그 비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조사되었음.

<표 40>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하고자 할 때 희망 시간(복수응답)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오전(09:00~12:00)	374	23.5
오후(13:00~18:00)	269	16.9
야간(18:00~21:00)	19	1.2
월요일	159	10.0
화요일	157	9.9
수요일	177	11.1
목요일	167	10.5
금요일	148	9.3
토요일	62	3.9
일요일	36	2.3
기타	23	1.4
합계	1,592	100.0



[그림 10]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 희망 시간의 대비율

주: 응답자 593명에 대한 복지관 이용 시간 희망을 비율(%)로 나타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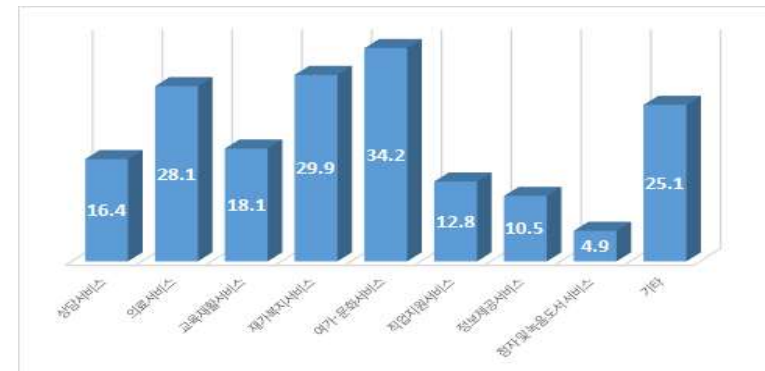
(11)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확대할 서비스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더 확대해야 할 서비스로 1순위는 여가·문화서비스, 2순위는 재가복지서비스, 3순위는 의료서비스로 나타났다.
- 여가·문화서비스(댄스스포츠, 볼링, 게이트볼, 쇼다운, 탁구 등)는 전체 응답자(648명) 대비 34.2%(222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재가복지서비스(주거환경, 밀반찬, 안부전화, 난방비 등)는 대비 29.9%(194명), 의료서비스(의안, 치과진료, 건강검진 등)는 대비 28.1%(182명)를 차지하였음. 그리고 교육재활서비스(점자, 보행 및 일상생활훈련, 정보화, 검정고시 등)는 대비 18.1%를 차지하였음.
- 다만, 기타의 의견이 대비 25.1%를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표 41〉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확대할 서비스(복수응답)

(단위: 명, %)

범주	빈도	구성비
상담서비스(일반상담, 재활상담, 법률상담 등)	106	9.1
의료서비스(의안, 치과진료, 건강검진 등)	182	15.6
교육재활서비스(점자, 보행 및 일상생활훈련, 정보화, 검정고시 등)	117	10.0
재가복지서비스(주거환경, 밀반찬, 안부전화, 난방비 등)	194	16.6
여가·문화서비스(댄스스포츠, 볼링, 게이트볼, 쇼다운, 탁구 등)	222	19.0
직업지원서비스(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83	7.1
정보제공서비스(소식지, 넓은 마을, 전화서합, 웹진 등)	68	5.8
점자 및 녹음도서 서비스	32	2.7
기타(결연후원, 물품지원 등)	163	14.0
합계	1,167	100.0



[그림 11]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확대할 서비스의 대비율

주: 응답자 648명에 대한 복지관 확대할 서비스 희망을 비율(%)로 나타낸 것임

(12)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용여부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해 본적 있는가에 대해 2명 또는 3명 이내에서 있다고 응답해 비교적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한 경우는 25.3%(214명)에 불과하였고, 반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한 경우는 69.5%(589명)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더구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5.2%(44명)로 조사되어 결국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7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표 42〉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용여부

(단위: 명, %)

범주	빈도	구성비
있다	214	25.3
없다	589	69.5
잘 모르겠다	44	5.2
합계	847	100.0

(13)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용에 대한 만족도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한 시각장애인의 기기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의 수준으로 평가 되었으며, 특히 효과성(평균 3.97점)과 적합성/효율성(평균 3.95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사용의 용이성(평균 3.44점)과 내구성(평균 3.58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빈도분석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효과성에 해당하는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한 후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긍정적 평가는 각각 37.9%와 25.2% 이었으며, 적합성 및 효율성에 해당하는 보조공학기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긍정적 평가는 각각 34.9%와 29.4%로 비교적 높게 응답되었음.

〈표 43〉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용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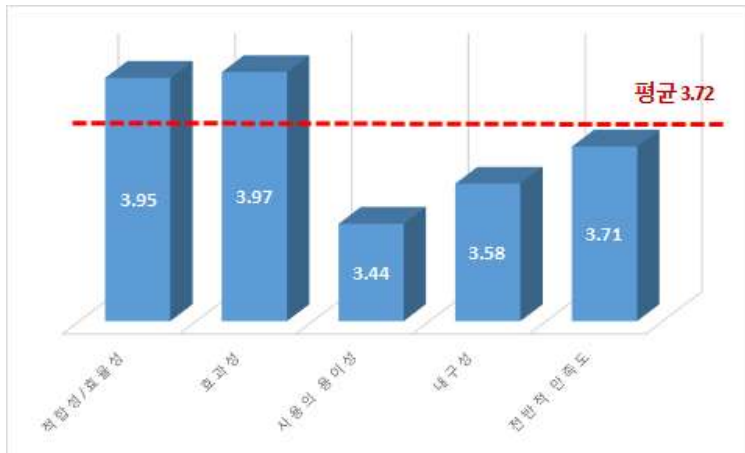
(단위: 명, %)

범주	만족 정도						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없음(미활용)	
가. 보조공학기기가 귀하에게 적합하십니까?(적합성, 효율성)	76 (34.9)	64 (29.4)	46 (21.1)	17 (7.8)	2 (0.9)	13 (6.0)	218 (100.0)
나.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한 후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효과성)	81 (37.9)	54 (25.2)	51 (23.8)	12 (5.6)	4 (1.9)	12 (5.6)	214 (100.0)
다. 보조공학기기는 사용하기 쉬웠습니까?(사용의 용이성)	42 (19.9)	62 (29.4)	52 (24.6)	30 (14.2)	14 (6.6)	11 (5.2)	211 (100.0)
라. 보조공학기기가 튼튼하다고 생각하십니까?(내구성)	45 (21.5)	62 (29.7)	60 (28.7)	22 (10.5)	8 (3.8)	12 (5.7)	209 (100.0)
마.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51 (24.2)	67 (31.8)	56 (26.5)	17 (8.1)	6 (2.8)	14 (6.6)	211 (100.0)

<표 44>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의 사용 만족도 평균값

(단위: 명, 점)

범주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 보조공학기기가 귀하에게 적합하십니까(적합성, 효율성)	205	1	5	3.95	1.009
나.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한 후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효과성)	202	1	5	3.97	1.036
다. 보조공학기기는 사용하기 쉬웠습니까(사용의 용이성)	200	1	5	3.44	1.180
라. 보조공학기기가 튼튼하다고 생각하십니까(내구성)	197	1	5	3.58	1.083
마.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97	1	5	3.71	1.041
합계	191	1.2	5.0	3.715	.8496



[그림 12]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의 사용 만족도 평균값

(14) 기초재활교육 경험여부 및 종류

- 기초재활교육을 받은 경험이 받지 않은 경험보다는 조금 더 많게 조사되었으며, 기초재활교육 중에서 점자교육과 보행교육이 주로 차지하였음.
- 기초재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3%(471명) 이었고, 반면에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5.7%(396명) 이어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없다’라는 응답보다 8.6% 더 높았음.
- 기초재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각장애인에게 어떠한 종류의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 재질문한 결과, 점자교육이 40.8%(331명)로 가장 많았으며, 보행교육이 30.5%(247명)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 컴퓨터(정보화) 교육은 18.7%(152명)를 차지하였고, 일상생활교육은 7.5%(61명)로 나타났다.

<표 45> 기초재활교육 경험여부 및 종류

(단위: 명, %)

범주	빈도	구성비	<경험 시 교육의 종류(복수응답)>		
있었다	471	54.3	범주	빈도	구성비
없었다	396	45.7	점자교육	331	40.8
합계	867	100.0	보행교육	247	30.5
<교육 경험여부>			컴퓨터(정보화) 교육	152	18.7
			일상생활교육	61	7.5
			기타	20	2.5
			합계	811	100.0

(15) 기초재활교육 기관

- 기초재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10명 약 7명에 가까운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연합회(지회)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시각장애인연합회(지회)에서 기초재활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7.9%(322명)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인복지관은 17.7%(84명)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 그리고 맹학교와 안마협회는 각각 8.0%(38명)와 2.7%(13명)로 비교적 적은 비율을 보였음.

<표 46> 기초재활교육 기관(복수응답)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시각장애인복지관	84	17.7
시각장애인연합회(지회)	322	67.9
안마협회	13	2.7
맹학교	38	8.0
기타	17	3.6
합계	474	100.0

(16) 기초재활교육 기간

- 기초재활교육 종류에 따른 교육기간은 점자교육이 가장 길었고, 보행교육, 컴퓨터(정보화)교육, 그리고 일상생활교육 순으로 길게 나타났음.
- 점자교육은 2년 이상의 교육기간이 32.7%(13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1년-2년이 그 다음으로 높은 23.4%(93명)로 높은 비율을 보여 대부분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보행교육은 2년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28.8%(92명)로 많았으나, 1년 미만의 교육기간이 약 40%로 나타났음.
- 일상생활교육은 2년 이상의 교육기간에 응답한 비율이 20.7%(44명)로 나타났음.
- 컴퓨터(정보화)교육은 2년 이상이 22.4%(59명), 그리고 6개월-1년 미만이 13.7%(36명)으로 나타났음.

<표 47> 기초재활교육 기간

(단위: 명, %)

범주	교육 기간						계
	1개월~3개월	3개월~6개월	6개월~1년 미만	1년~2년	2년 이상	해당사항 없음	
점자교육	63 (15.8)	38 (9.5)	38 (9.5)	93 (23.4)	130 (32.7)	36 (9.0)	398 (100.0)
보행교육	52 (16.3)	38 (11.9)	34 (10.7)	44 (13.8)	92 (28.8)	59 (18.5)	319 (100.0)
일상생활교육	10 (4.7)	6 (2.8)	17 (8.0)	9 (4.2)	44 (20.7)	127 (59.6)	213 (100.0)
컴퓨터(정보화)	17 (6.5)	22 (8.4)	36 (13.7)	25 (9.5)	59 (22.4)	104 (39.5)	263 (100.0)

(17) 기초재활교육의 생활상 도움 정도 및 미도움 시 이유

- 기초재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이 생활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는 긍정적인 응답이 약 90%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 기초재활교육이 생활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2.6%(294명)로 가장 많았고, 여기에 조금 도움을 받았다는 25.7%(121명)의 응답까지 합하면 10명 중에 9명 정도는 기초재활교육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음.
- 다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11.7%(55명)에게 그 이유를 재질문한 결과, 본인의 노력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그 다음이 교육기간이 짧아서라는 답변을 하였음. 이외에 다양한 기타 의견이 있었음.

<표 48> 기초재활교육의 생활상 도움 정도 및 미도움 시 이유

(단위: 명, %)

범주	빈도	비율
많은 도움을 받았다	294	62.6
조금 도움을 받았다	121	25.7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55	11.7
합계	470	100.0

⇒ <미도움 시 이유>

범주	빈도	구성비
교육기간이 짧아서	12	24.0
교육과정이 좋지 않아서	0	0
본인의 노력 부족으로	22	44.0
가족의 반대 때문에	0	0
기타	16	32.0
합계	50	100.0

<기초재활교육의 생활상 도움 정도>

(18) 기초재활교육 받을 시 애로사항

- 기초재활교육을 받으려 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교육장소가 너무 멀어서로 조사되었고, 그 외에도 기타로 다양한 이유들이 제시되었음.
- 교육장소가 너무 멀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23.8%(11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기관을 잘 몰라서와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18.8%(90명)씩 조사되었음. 교육기간이 길어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5.0%(24명)의 비율로 낮게 나타났음.
- 기타 의견으로 33.6%의 높은 응답을 보였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등의 많은 이유들을 제시하였음.

<표 49> 기초재활교육 받을 시 가장 큰 애로사항

(단위: 명, %)

범주	빈도	구성비
교육기관을 잘 몰라서	90	18.8
시간이 부족해서	90	18.8
교육장소가 너무 멀어서	114	23.8
교육기간이 길어서	24	5.0
기타	161	33.6
합계	479	100.0

(19) 점자해독 가능 상태

- 점자해독이 가능한가에 대해 가능한 경우(42.7%)보다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57.3%)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았고, 점자해독이 가능한 경우에서도 읽기만 가능한 경우이거나 쓰기만 가능한 경우가 비교적 높았음(각각 10명 중 1명씩 정도임).
- 점자해독이 모두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57.3%로 높게 응답되었음.
- 읽기만 가능한 경우는 15.4% 이었으며, 쓰기만 가능한 경우는 10.9% 이었고, 읽기와 쓰기 모두가 가능한 경우는 2.3%에 불과하였음. 짧은 문장 읽기만 가능한 경우는 3.2% 이었고, 간단한 단어나 숫자만 가능한 경우는 9.8%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음.

<표 50> 점자해독 가능 상태(복수응답)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읽기 가능	111	15.4
쓰기 가능	79	10.9
읽기와 쓰기 모두 가능	20	2.8
짧은 문장 읽기 가능	23	3.2
간단한 단어, 숫자만 가능	71	9.8
점자해독이 모두 가능하지 않음	414	57.3
기타	4	0.6
합계	722	100.0

5) 건강 관련 사항

(1) 만성질환의 유무

- 경기도 시각장애인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만성질환이 없다는 응답은 28.4%(248명)로 비교적 낮게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만성질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71.6%으로 높게 나타났음.
- 더구나, 만성질환 중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고 있다는 응답이 67.0%(585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만성질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다는 2.9%(25명), 그리고 3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다는 1.7%(15명)로 응답되었음.

<표 51> 만성질환 유무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없다	248	28.4
3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다	15	1.7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다	25	2.9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고 있다	585	67.0
합계	873	100.0

(2) 자살 생각 경험여부

- ☐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은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경우가 더 높았으나, 2018년 한 해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가 40.1%에 이르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
- 2018년 한 해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40.1%(350명)이었던 반면, 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59.9%(523명)이었음.
 - 이처럼 비록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없다는 응답자보다 낮지만, 전체 응답자의 40% 정도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는 수치는 전체 국민에 대한 유사한 조사(<표 53> 참조)와 비교해 보면 매우 높은 것으로 심각한 사안임.
 - 시각장애인의 자살 생각 또는 자살과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예방방안 등이 시급히 모색될 필요가 크다고 사료됨.

<표 52> 자살 생각 경험여부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있음	350	40.1
없음	523	59.9
합계	873	100.0

<표 53> 1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 생각 경험여부

(단위: %)

범주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전체
있음	4.97	0.87	1.55
없음	89.65	94.86	93.99
모름/무응답	5.38	4.27	4.46
합계	100.00	100.00	100.00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 2017년 12차 웨이브

(3) 신체활동 경험일 수

- ☐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 걷기, 등산, 자전거 타기 등의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인가에 대해 평균 3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혀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14.8%로 나타났음.
- 빈도분석으로 살펴보면 매일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가 30.1%(26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혀 활동하지 않거나 3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50%를 넘고 있어 평균적으로는 약 3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 전혀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14.8%로 10명 중 1명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음.

<표 54> 주당 신체활동 경험일 수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1일	38	4.4
2일	107	12.3
3일	141	16.2
4일	51	5.9
5일	117	13.4
6일	25	2.9
7일(매일)	262	30.1
전혀 하지 않음	129	14.8
합계	870	100.0

(4) 우울감

- 5점 척도로 구성된 우울감에 대한 11개 문항의 측정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의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1.91점으로 비교적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를 시행한 날로부터 이전 일주일 동안 11개 문항으로 구성된 우울감 지표에서 전체 평균 1.91점(표준편차 .571)을 보여, 우울감을 가끔 느끼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음.
- 세부 항목에서는 잠을 설쳤다(잠을 이루지 못했다) 항목에서 우울 정도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표 55> 우울감

(단위: 명, 점)

범주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872	1	4	1.62	.929
나. 비교적 잘 지냈다.	862	1	4	2.99	1.178
다. 상당히 우울했다.	868	1	4	1.76	.994
라.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866	1	4	1.91	1.046
마.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868	1	4	2.26	1.146
바.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867	1	4	1.94	1.091
사.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860	1	4	2.36	1.262
아.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856	1	4	1.42	.791
자. 마음이 슬펐다.	862	1	4	1.72	.948
차.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858	1	4	1.35	.734
카.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858	1	4	1.70	1.017
합계	814	1	4	1.91	.571

6) 취업 관련 사항

(1) 직업 활동여부

-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은 직업 활동 즉,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 응답은 79.0%(687명)로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였음.
- 반면,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21.0%(183명)로 적은 수치를 보였는데,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무의 경력기간이 10년 이상이 37.9%로 가장 컸지만, 5년 이하도 약 절반 가량에 속해 근무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경우도 많았음.

<표 56> 현재 직업 활동여부 및 총 근무연수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일을 할 경우 총 근무연수>		
일을 하고 있다	183	21.0	범주	빈 도	구성비
일하고 있지 않다	687	79.0	1년 이하	18	17.5
합계	870	100.0	3년 이하	18	17.5
<현재 직업 활동여부>			5년 이하	12	11.7
			7년 이하	6	5.8
			9년 이하	10	9.7
			10년 이상	39	37.9
			합계	103	100.0

(2) 현재 직업 형태

-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규직(안마사 포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용직(안마사 포함)으로 많았음.
- 정규직(안마사 포함)은 31.1%(52명), 일용직(안마사 포함)은 22.8%(38명), 자영업(안마사 포함)은 12.0%(20명)로 응답되었음.
- 그런데 기타의 유형에 속하는 응답이 사실상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표 57> 현재의 직업 형태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자영업(안마사 포함)	20	12.0
일용직(안마사 포함)	38	22.8
정규직(안마사 포함)	52	31.1
주부	3	1.8
학생(훈련과정 포함)	0	0
기타	54	32.3
합계	167	100.0

(3) 근무 장소

- ☐ 현재 일을 하는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기관(자립생활센터 등 포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일반사업체 이었음.
-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기관(자립생활센터 등 포함)은 42.3%(71명)의 응답 비율을 보여 가장 많은 근무 장소에 해당하였으며, 일반사업체는 23.2%(39명)로 그 다음으로 많은 근무 장소로 조사되었음.
- 정부 및 관련 정부기관이 근무 장소라고 응답한 비율은 11.3%(19명)로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음.
- 기타로는 “경로당, 종교시설” 등이 있었는데, 14.9%의 비율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였음.

<표 58>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무 장소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일반사업체	39	23.2
정부 및 관련 정부기관	19	11.3
표준사업장	2	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12	7.1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기관(자립생활센터 등)	71	42.3
기타	25	14.9
합계	168	100.0

(4) 현재 직장의 애로사항

- ☐ 현재 직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낮은 수입이었음.
- ☐ 현재 직장에서 37.0%에 해당하는 응답자만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그러나 63.0%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중에서 낮은 수입이 37.5%로 거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출퇴근 이동 문제로 9.0%로 나타났음. 그리고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가 3번째의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음.

<표 59> 현재 직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복수응답)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낮은 수입	75	37.5
직장 내 대인관계	8	4.0
승진문제	0	0.0
과도한 업무량	4	2.0
직무 관련 기술 부족	6	3.0
성차별 및 성희롱	2	1.0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9	4.5
출퇴근 이동 문제	18	9.0
기타	4	2.0
특별히 없음	74	37.0
합계	200	100.0

(5) 취업 유지에 필요한 사항

- ☐ 취업 유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금전적 지원(임금보조, 세제지원 등)이라고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도 근무환경, 직무 관련 교육 및 훈련, 업무 지원 관련 정보제공,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지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 금전적 지원(임금보조,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환경(이동거리, 복리후생, 근무시간 등)은 13.3%, 직무 관련 교육 및 훈련은 12.5%, 그리고 업무지원 관련 정보제공(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과 지속적인 사후지도는 각각 12.2%와 11.0%로 나타났음.
- ☐ 반면, 현재 취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6.3%를 차지하고 있었음.

<표 60> 취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복수응답)

(단위: 명, %)

범주	빈 도	구성비
직무 관련 교육 및 훈련	33	12.5
금전적 지원(임금보조, 세제지원 등)	68	25.9
동료근로자들의 장애인식	21	8.0
근무환경(이동거리, 복리후생, 근무시간 등)	35	13.3
업무지원 관련 정보제공(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32	12.2
지속적인 사후지도	29	11.0
기타	2	0.8
특별히 없음	43	16.3
합계	263	100.0

(6)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

-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주된 이유는 장애로 인한 업무 수행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음.
- ☐ 장애로 인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72.6%로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매우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 그 외의 요인으로는 나이 또는 건강의 제한으로가 8.3%로 두 번째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고, 근처에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요인은 5.2%를 보여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표 61>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의 사유

(단위: 명, %)

범주	빈도	구성비
전공,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음	9	1.7
임금수준, 근로조건이 맞는 곳이 없음	7	1.4
근처에 일자리가 없음	27	5.2
교육, 기술, 경험 부족	15	2.9
구직정보 및 취업정보 부족	11	2.1
장애로 인한 업무 수행 어려움	374	72.6
나이 또는 건강의 제한으로	43	8.3
기타	29	5.6
합계	515	100.0

IV. 결론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적 욕구의 경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욕구에 대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적정하고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등의 욕구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지난 2013년 이후부터 경기도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적절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의 책임성을 제고해 오고 있는 속에서 전국 최고의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모색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9년 1월 ~ 2월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중 889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수요적 특성과 그에 대응한 시각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급 적정성 등의 수준 분석 및 검토함으로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및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음.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 책임성의 향상 등을 위한 방안들로서 다음과 같은 사안과 내용들을 제언하고자 함.

1.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지방정부 시각장애인 복지정책 개발과 복지서비스 제공

○ 첫째,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이동권 확보 및 서비스의 다양성과 실효성 제고

- 2018년 한 해 동안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최소한 10명 중 8명에 이르는 80%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거주지에서 복지관까지 걸리는 시간 유형에 따라 이용률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었음.
- 우선, 거주지에서 복지관까지 30분 이내의 이동시간에 위치한 지자체 지역(지역1 유형)에 사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전체 평균 이용률과 비교해 더 높은 복지관 이용률을 보였고, 반면, 이동시간이 30분에서 60분 이내로 걸리는 지자체 지역(지역2 유형)과 60분 이상으로 걸리는 지자체 지역(지역3 유형)은 전체 평균 이용률보다는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이는 공간적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시각장애인이 실제로 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다음으로,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역2 유형에 사는 시각장애인이 지역3 유형에 사는 시각장애인보다 오히려 더 낮은 이용률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이유는 서울시 근교의 지역에서 사는 시각장애인이 관련 복지서비스를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충분한 서울시의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서울시 지역과 먼 지역에 사는 시각장애인은 이동시간이 서울시나 의정부 등까지 비슷하다면 서울시보다는 의정부 등의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등까지 직접 이동하여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접근성(교통편)인 것으로 전체 응답 중 71.9%(441명)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으로 12.9%(79명)를 차지해 두 번째로 고려하는 요인이었음.

-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하나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특히 이동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사회서비스 수단으로서 개선시키는 정책제도가 동반되어야 할 것임(김제선·김창기, 2017).
- 다른 하나는 지금과 같이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흩어져 생활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찾아가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임. 즉, 지금처럼 복지관 직원들이 각 시군별로 이동해 시각장애인이 살고 생활하는 지역사회 안으로 아웃리치 또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는 고 있으나, 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 아주 제한적인 서비스만을 제공받고 있는 상황

○ 둘째, 지역사회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확대와 도내 권역별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기존 장애인복지관에 시각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률 확대

-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시각장애인연합회 중 지회 다음으로 이용률이 높기는 했으나, 시각장애인 절반 이상이 월 평균 2회 이상 이용하였고, 월 평균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27.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지만 경기도 권역별로 시각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적합하면서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권역별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 운영하는 정책적 방안이 해결되어야 함.
- 이 때 공간적 범위가 넓고 비도시지역의 형태가 혼재되어 있는 경기도

에서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이전부터 충분히 시각 장애인들의 이동접근 제약 등을 고려해 지역사회 내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장소 즉, 이동시간과 교통수단 등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장애인복지정책 또는 공공건축물 건립 등에 관한 정책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임. 접근하는 과정이 어려워 정작 복지서비스 등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이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는 정책적 책임성을 높이는 자세가 중요함.

- 일상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어떠한 위험이 있을 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정도는 매우 높았고, 대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에서 많게는 30% 이상에 이르는 경기도시각장애인은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으로 첫 번째로는 여가 및 문화생활이었던 반면, 두 번째로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경기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하루 일과를 유익하게 지내거나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음.
- 2018년 한 해 동안 일상생활 유지와 체육 활동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어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시급함.
- 현재 복지서비스 이용 시간대는 오전이 월등히 많았으며, 요일에서는 수요일 > 목요일 > 월요일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나타나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해 기획 및 계획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경기도 시각장애인에게 더 확대해야 할 복지서비스로는 1순위가 여가·문화서비스, 2순위가 재가복지서비스, 3순위가 의료서비스 등이어야 하며, 이를 현재 한 곳 밖에 없는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모두 하기에 공간적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장애인복지관에서 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더욱 많은 시각장

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확대해야 할 것임.

- 셋째, 저소득 시각장애인 가구 등의 소득이전을 위한 공적 급여 및 사회보험료 지원
 - 시각장애인 가구의 30% 정도가 소득이 없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이며,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은 평균 100만원 미만인 전체 응답자 중 50% 이상을 넘고 있어, 경기도 시각장애인 2명 중 최소 1명 이상이 최저생계비(2018년도 1인 가구 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득이 없으므로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낮고, 특히 고용촉진 또는 실업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험에 취약함.
 - 따라서 경기도에서 관련 유사한 조례에 시각장애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임.
- 넷째, 청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개발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
 -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수입(평균 2.38점), 본인의 건강(평균 2.69점), 직업(평균 2.7점)에 대한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업 활동 즉,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79.0%(687명)로 나타나 경기도 시각장애인은 사회참여, 특히 직업 활동이 매우 낮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현재 일을 하는 경우에 근무장소를 살펴보면,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기관(자립생활센터 등 포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일반사업체로 나타났다. 더구나 현재 직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낮은 수입으로 나타났다. 취업 유지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나 정책으로는 금전적 지원(임금보조, 세제지원 등)이었으며, 그 외에도 근무환경, 직무 관련 교육 및 훈련, 업무지원 관련 정보제공,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지도가

필요하였음.

-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보다 다양한 직업 종류와 형태들이 개발되어 취업률을 높여야 하며, 또한 시각장애인 스스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급여 수준이 높은 괜찮은 일자리에서 일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
- 더불어, 장애나 나이 등으로 인한 업무 수행에서 곤란한 상황이 있는 직업보다는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다섯째,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건강 향상 및 유지를 위한 공적 의료건강 서비스 제공

-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의 상당수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과 만성질환이 있다는 응답률이 무려 70% 이상을 넘는 등 건강의 부정적 요인이 높은 편임. 더구나, 만성질환 중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고 있다는 응답이 67.0%(585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만성질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더구나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가 더 높기는 했으나, 2018년 한 해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가 40.1%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자살 생각률의 조사결과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음. 이에 대한 예방방안을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 모색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사료됨.
- 또한, 경기도 시각장애인에게 우울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도 적어 생활상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건강 향상 및 유지를 위한 공적 의료지원 및 시각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여가를 보내고 운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여섯째, 생활 영역 및 독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확대 및 편의시설 의무

설치와 편의시설 이용률 확대

-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외출 시 주로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그 다음이 대중교통 중 버스와 지하철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독립보행이 가능한 경우로는 가정 내에서 또는 집 주변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가장 많아 대부분 가정 내와 그 인근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지팡이의 활용률은 40% 정도이었음.
- 이동 시 편의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특히 설치되는 되어 있지만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27.0%로 가장 많이 설치율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거나 그 사용법을 훈련하고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정책 서비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일곱째,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용률 개선 및 기초재활교육에 대한 지원 증대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해 본 적 있는가에 대해 경기도 시각장애인 2명 또는 3명 이내는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비교적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음.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용에 관한 효과성(평균 3.97점)과 적합성/효율성(평균 3.95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사용의 용이성(평균 3.44점)과 내구성(평균 3.58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요인은 기기나 장비들이 고가이고, 보조공학기기를 국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연 1회 뿐이었으며, 일단 한 종류라도 선정되면 다른 종류의 기기는 선정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었음(직장인이나 학교교육 과정은 장애인고용공단이나 교육청 통해 지원). 여기에다가, 기기의 기능들이 스마트폰과 통합되어지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

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 확대와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기초재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이 생활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는 긍정적인 응답이 약 90%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연합회(지회)에서 기초재활교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여덟째, 시각장애인 스스로 점자를 활용해 이동 등 생활의 도움뿐 아니라, 교육이나 취업 등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자 자료 제작과 보급 확대 및 점자 교육 강화

- 점자해독이 가능한가에 대해 가능한 경우(42.7%)보다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57.3%로 조금 더 많았고, 점자해독이 가능한 경우에서도 읽기만 가능한 경우이거나 쓰기만 가능한 경우가 비교적 높았으나, 각각 10명 중 1명씩 정도에 불과하였음.
-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점자를 접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여 공공기관의 각종 기본 정책서나 소식지 등의 점자 간행물 등으로 보급 확대하고, 동시에 시각장애인들이 점자해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임.

2. 연계(network) 체계 구축 및 활성화

○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구축하여야 할 연계체계는 프로그램 간 연계체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자원체계와의 연계, 시각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일반 복지관 포함)과의 연계, 기존의 시각장애인연합회 각 지부(회)와의 연계, 시각장애 관련 전문가들과의 연계체계까지도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시각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각 지역에 시각장애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관련 기관(복지관, 지부나 지회, 단체 등)들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 둘째,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주요 복지시설 뿐 아니라 각종 공적 복지 서비스 기관, 민간 복지 서비스 기관들과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셋째, 경기도 외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등과 원활한 연계체계 구축

3. 시각장애인복지 종사 전문인력의 인적자원개발 및 역량 강화

-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이며, 그 중에서도 전문 시각장애인복지직종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시각장애복지시설 등의 전문종사자의 잦은 이직 등에 관한 인력관리도 중요하지만, 전문적 인력을 충원하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복지관 직원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과 관리, 그리고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시각장애인은 타 장애인과 달리 보행, 점자, 일상생활 훈련 등 특수한 교육을 필요로 하므로 시각장애인 재활서비스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복지관에 채용된 직원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이므로 이들에 대한 재교육의 실시로 보행지도사, 점역·교정사, 시각장애인 전문 정보화 강사 등 시각장애인 재활전문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직원의 전문 인력화와 능력 배양에도 힘써야 할 것임(양희택·조성재·황주연·백혜련·곽유나, 2014).

4. 경기도 시각장애인에 관한 인식개선 사업

- 학생, 시민은 물론 정책 집행자, 공공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개선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제고하는 사회적 관심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5. 연구 개발을 통한 시각장애인복지 정책 개발 및 보급

-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최대의 광역 거점 시각장애인기관이며, 반면에 경기도에 등록된 시각장애의 인구가 가장 많고, 경기도의 공간적 지역별 특성(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산간, 군사지역 등)이 광활하고 각 권역별로 상이하여 시각장애인복지 인프라도 다른 지자체와 달리 다양한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경험들이 축적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을 새로이 수립하고 이를 롤모델로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매년 전국적 수준에서 신뢰성이 높고 일반화될 수 있는 시각장애인복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연속적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표준의 시각장애인복지의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한 충분한 연구수행 예산 등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2013). 『2013년도 경기북부시각장애인 욕구조사보고서』.
- 김상원·엄문설·안새미·이양희·조준동(2018). 시각장애인의 스트레스, 여가생활,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시각장애연구』 34(1). pp.25-39.
- 김제선·김창기(2017). 접근성이 비도시지역 장애인의 복지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1. pp.81-102.
- 김영일(2008). 『시각장애인복지론』. 집문당.
- 김영일(2011). 외국 시각장애관련 전문가 양성 현황 및 보행지도사의 역할. 『보행지도사 양성 교육 자료집』.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 pp5-20.
- 김원호·이유화·김시현(2009). 시각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실태 분석 및 대중교통시설 내보행지원 시스템 구축방안. 『서울도시연구』 10(3). pp.97-114.
- 김육미(2008).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윤·김정환·김성철(2013).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사회적 자본과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7(2). pp.157-185.
- 김정희(2007).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일(2018).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사회참여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8a). 「등록장애인 통계자료」.
- 보건복지부(2018b). 「2018년 장애인실태조사」.
- 양희택·조성재·황주연·백혜련·곽유나(2014). 「경기도 시각장애인 서비스 욕구

분석과 시각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이기중(2017). 「중도실명자가 삶에서 겪는 소외 경험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숙정(2013). 시각장애인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행태가 주관적인 구강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 pp.337-345.

전은영(2015).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습관 요인이 대사증후군 유병위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재활학회」 25(2), pp.41-53.

정무성·양희택·노승현·현종철(2012). 「장애인복지론」, 정민사.

최진한(2014). 「시각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경기도청(2019). <https://www.gg.go.kr/archives/2278148>

[부록] 설문조사표

2018년 경기도 시각장애인 욕구 실태조사		ID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13년 개관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 시각장애인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적절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더욱 복지관 운영과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에 경기도 시각장애인 여러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다음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모든 응답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개인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또한, 조사결과는 향후 우리 복지관 사업뿐 아니라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연구주관기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연락처] ☎ 031-850-5300 통계법 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제공에 관하여本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비밀로 보아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제공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本法에 규정된 목적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8 경기도 시각장애인 욕구 실태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목적에 동의하는 설문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A. 인적 사항		
A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남자 ☐ 여자	A2) 귀하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년	
A3)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접근성 문제로 인해 가능한 '현재'까지 기재해 주세요) 시군 _____	A4) 귀하의 장애가 발생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선천성일 경우 출생년도를 기재해 주세요) 년	
A5) 귀하의 장애등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미등록	A6) 귀하의 장애원인은 무엇입니까? ☐ 선천적 ☐ 사고(일인, 출생시 포함) ☐ 후천적 질병 ☐ 원인불명	
A7)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디까지입니까? ☐ 무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원 ☐ 대학원 ☐ 대학원 ☐ 4년제 대학교 ☐ 대학원 ☐ 대학원 ☐ 대학원 ☐ 기타()	A8) 귀하의 주거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자택 ☐ 전세 ☐ 월세(원전세 포함) ☐ 임대주택(정부지원) ☐ 기타()	

B. 가구 정보	
B1-1) 귀댁의 총 가구원수는 몇 명입니까?	B2)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본인을 포함한 총 가구원수 ()명	☐ 미혼 ☐ 유배우/결혼/동거 ☐ 사별/이혼/별거
미-2)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원수(본인 포함) ()명	
미-3) 귀하의 주 수입원은 누구입니까?	
☐ 본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 ☐ 형제 자매	
☐ 정부보조(연금 포함) ☐ 기타() ☐ 없음	
B3) 귀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입니까?	B4)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세금공제 이전 금액은 얼마입니까?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수급가구가 아님	월평균 만원
☐ 월간수급가구(의료·교육·자활특례 제외)	
☐ 조건부수급가구(자활특례 포함)	
☐ 의료·교육·자활특례가구	
B5) 다음의 사회보험종류에 대한 가입여부 및 가입된 보험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	☐ 가입되어 있음 ☐ 가입되어 있지 않음 ☐ 가입 여부를 모르겠음
건강보험	☐ ☐ ☐
고용보험	☐ ☐ ☐
B5-2) [위에서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이 가입된 경우만] 가입된 보험의 종류는?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B5-3) [위에서 '건강보험'이 가입된 경우만] 가입된 보험의 종류는?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의료수급자 ☐ 직장가입자부양자	

C. 일상생활 도움 및 어려움 관련 사항	
C1) 귀하가 일상생활(선저리 가정활동 등)을 할 때 있어 도움이 필요한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C2) 귀하가 사회생활(직장생활, 학업,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활동 등)을 할 때 있어 도움이 필요한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도움이 매우 필요함	☐ 도움이 매우 필요함
☐ 도움이 조금 필요함	☐ 도움이 조금 필요함
☐ 도움이 필요함	☐ 도움이 필요함
☐ 도움이 필요 없음	☐ 도움이 필요 없음
C1-2)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로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센터 등) ☐ 가족(친척)으로부터 도움 받음 ☐ 이웃(지인)으로부터 도움 받음 ☐ 사회복지서비스(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센터 등)를 통해 도움 받음 ☐ 개인적으로 사설·재능인 도움 받음 ☐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기타()	C2-2)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로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센터 등) ☐ 가족(친척)으로부터 도움 받음 ☐ 이웃(지인)으로부터 도움 받음 ☐ 사회복지서비스(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센터 등)를 통해 도움 받음 ☐ 개인적으로 사설·재능인 도움 받음 ☐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기타()
C3) 귀하는 안전을 위해 발거나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C4) 귀하의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받을 수 있음	☐ 근무
☐ 받을 수 없음	☐ 교육(훈련 및 수강 포함)
☐ 잘 모르겠음	☐ 여가 및 문화생활(종교 포함)
☐ 기타	☐ 자원봉사활동
	☐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음
	☐ 가사(질)에 있음
	☐ 취미·취미 활동
	☐ 병원 또는 운동
	☐ 기타()

C5) 귀하는 2018년 한 해 동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경험하십니까?	5-1) 어려움의 정도		5-2) 어려움의 정도	
	어려움 없음	어려움 있음	어려움 없음	어려움 있음
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	☐	☐	☐
나. 가족 관계에 어려움	☐	☐	☐	☐
다. 친척, 이웃, 사회복지기관과 관계 형성에 어려움	☐	☐	☐	☐
라. 문화생활 활동에 어려움	☐	☐	☐	☐
마. 직장 활동에 어려움	☐	☐	☐	☐
바.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	☐	☐	☐	☐
사. 불안한 주거환경에 어려움	☐	☐	☐	☐
아. 정보습득에 어려움	☐	☐	☐	☐
자. 장애인 등 의료지원에 대한 어려움/환경	☐	☐	☐	☐
차. 작은 금액 등 근로환경에 대한 어려움	☐	☐	☐	☐

C6) 아래 문항에 대해 귀하가 느끼는 정도를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해당 없음
가. 본인의 건강	☐	☐	☐	☐	☐	☐
나. 본인 및 가족의 수입	☐	☐	☐	☐	☐	☐
다. 주거 환경	☐	☐	☐	☐	☐	☐
라. 배우자와의 관계(배우자가 있는 경우)	☐	☐	☐	☐	☐	☐
마. 자식와의 관계(자식이 있는 경우)	☐	☐	☐	☐	☐	☐
바. 가족 관계	☐	☐	☐	☐	☐	☐
사. 직업	☐	☐	☐	☐	☐	☐
아. 사회적 편견/편견	☐	☐	☐	☐	☐	☐
자. 여가생활	☐	☐	☐	☐	☐	☐

D. 이동편의성 및 사회 이용 관련 사항	
D1) 귀하의 평균 외출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D2) 외출 시 주된 이동 수단은 무엇입니까?
주 ()회의 외출	☐ 대중교통-버스 ☐ 대중교통-지하철 ☐ 대중교통-일반버스
* 외출하지 않을 시 '0'으로 기재	☐ 생활이동선(차량) ☐ 서민버스 ☐ 통영보통인 차량 ☐ 기타
D3) 귀하는 독립보행이 가능한 경우를 모두 체크해 주세요. (복수응답)	D4) 귀하의 독립보행 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가능)
☐ 가령 내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함 ☐ 길주변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함	☐ 잔존시력 ☐ 음향안내기 ☐ 점자블록 ☐ 인도전
☐ 도로변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함	☐ 횡단보도 ☐ 횡단보도(지팡이) ☐ 가족 또는 지인
☐ 지하철 및 타(지)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함	☐ 보행 불가능 ☐ 기타()
☐ 시장 혹은 소형상점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함	
☐ 가령 () 다른 곳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함	
☐ 독립보행이 가능하지 않음	
D5-1) 귀하는 독립보행 시 실제 원자거나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찾아가 경험하십니까?	D5-2) (앞의 '이용하지 않음'으로 답한 경우만) 독립보행 시 원자거나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체/패턴 이용함 ☐ 주 1-2회 이용함	☐ 잘못된 설치로 인하여 ☐ 설치는 되어 있지만 필요성을 못 느껴서
☐ 월 1-2회 이용함 ☐ 가끔 이용함	☐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 주변 시설이 없어서
☐ 이용하지 않음	☐ 편의시설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 기타()

D6-1)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 이용하고 있음 ☐ 앞으로 이용 예정임 ☐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임	D6-2) (별의 '이용하지 않은 예정임'으로 인한 경우)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앞으로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불편해서 ☐ 혼자서 독립보행이 가능해서 ☐ 경제적 부담 때문에 ☐ 지원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 가족들이 싫어해서 ☐ 활동 지원서비스를 잘 몰라서 ☐ 연령 또는 등급 제한 ☐ 기타()
D7-1) 2018년 한 해 동안 시각장애인 복지자전거를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D7-2)번과 D7-3)번에 응답 ☐ 없다 → D8-1)번으로	D7-2) (별의 '있다'로 인한 경우) 귀하가 시각장애인 복지자전거를 처음 알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 TV, 라디오/뉴스, 스마트폰 등 ☐ 낯은 마을/사서함 ☐ 장애인단체(협회) ☐ 장애인복지관 ☐ 관공서/시장/주민센터 ☐ 기타()
D7-3) 2018년 한 해 동안 이용했던 시각장애인 복지자전거 중 한 달 평균 이용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 가평(사설)당 시각장애인복지관 한 달 평균 이용 횟수 회 (있으면 D9-1)번으로/ 없으면 D10)번으로) ☐ 가평(사설)당 시각장애인연합회-지회 한 달 평균 이용 횟수 회 (D10)번으로) ☐ 가평(사설)당 시각장애인연합회-농촌이동지원센터 한 달 평균 이용 횟수 회 (D10)번으로) ☐ 가평(사설)당 기타() 한 달 평균 이용 횟수 회 (D10)번으로)	
D8-1) 귀하는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으셨습니까? (복수 선택가능) ☐ 기초재활교육/평가, 일상생활, 보행, 정보화 등) ☐ 재가복지서비스(난방비, 일반화, 후원 등) ☐ 직업 서비스(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 문화 여가 서비스 ☐ 체육(건강)활동 서비스 ☐ 방문 직 업 등 ☐ 기타()	D8-2)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 시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 장애인정보 ☐ 복지시설/시설, 헬스장 등) ☐ 장애인 정보 ☐ 편의시설(장애인정보, 휴게소, 음영주차 등) ☐ 프로그램의 다양성 ☐ 이용시간 ☐ 기타()
D8-3)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 하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복수 선택가능) ☐ 오전(09:00~12:00) ☐ 오후(13:00~18:00) ☐ 야간(18:00~21:00)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 기타()	D8-4)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더 확대해야 할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가능) ☐ 상담서비스(일반상담, 재활상담, 법률상담 등) ☐ 의료서비스(외안, 치과진료, 건강검진 등) ☐ 교육재활서비스(점자, 보행 및 일상생활훈련, 정보화, 점자고지 등) ☐ 재가복지서비스(주거환경, 일반화, 난방비, 난방비 등) ☐ 여가 문화서비스(점자스포츠, 볼링, 제이브, 소담, 탁구 등) ☐ 직업지원서비스(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 정보제공서비스(소식지, 낯은 마을, 전화사서함, 웹진 등) ☐ 점자 및 녹음도서 서비스 ☐ 기타()
D9)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관 정보를 몰라서 ☐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 ☐ 거리가 멀다 ☐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 안내 도우미가 없다 ☐ 시간이 안 맞아서 ☐ 기타()	D10-1) 귀하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D10-2)번으로 ☐ 없다 → D11)번으로 ☐ 잘 모르겠다 → D11)번으로

D10-2) (D10-1)번의 '있다'고 답한 경우) 귀하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셨다면 다음 사항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없음 (미활용)
가. 보조공학기기가 귀하에게 적합하십니까(적합성, 효율성)	☐	☐	☐	☐	☐	☐
나.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한 후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효과성)	☐	☐	☐	☐	☐	☐
다. 보조공학기기는 사용하기 쉬우십니까(사용의 용이성)	☐	☐	☐	☐	☐	☐
라. 보조공학기기가 튼튼하다고 생각하십니까(내구성)	☐	☐	☐	☐	☐	☐
마.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	☐	☐	☐	☐

D11-1) 귀하는 기초재활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 있다 → D11-2)번에 맞춰 분류의 기초재활교육을 받으셨습니까? ☐ 없다	D11-3) 기초재활교육을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복수 선택가능) ☐ 시각장애인복지관 ☐ 시각장애인연합회(지회) ☐ 안마협회 ☐ 병력고 ☐ 기타()
---	---

D11-4) 기초재활교육 기간은 얼마입니까? (모두 고르세요) <table border="1"> <tr> <th></th><th>1개월 이하</th><th>1개월 이상 3개월 이하</th><th>3개월 이상 6개월 이하</th><th>6개월 이상 1년 이하</th><th>1년 이상 2년 이하</th><th>2년 이상 3년 이하</th><th>3년 이상 4년 이하</th><th>4년 이상 5년 이하</th><th>5년 이상</th><th>특정사항 없음</th></tr> <tr> <td>점자교육</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보행</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일상생활</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정보화</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개월 이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6개월 이상 1년 이하	1년 이상 2년 이하	2년 이상 3년 이하	3년 이상 4년 이하	4년 이상 5년 이하	5년 이상	특정사항 없음	점자교육	☐	☐	☐	☐	☐	☐	☐	☐	☐	☐	보행	☐	☐	☐	☐	☐	☐	☐	☐	☐	☐	일상생활	☐	☐	☐	☐	☐	☐	☐	☐	☐	☐	정보화	☐	☐	☐	☐	☐	☐	☐	☐	☐	☐	D11-5) 기초재활 교육이 생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많은 도움을 받았다 ☐ 조금 도움을 받았다 ☐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 D11-5)번에 맞춰 분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를? ☐ 교육기간이 짧아서 ☐ 교육내용이 좋지 않아서 ☐ 본인의 노력 부족으로 ☐ 가족의 반대 때문에 ☐ 기타()
	1개월 이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6개월 이상 1년 이하	1년 이상 2년 이하	2년 이상 3년 이하	3년 이상 4년 이하	4년 이상 5년 이하	5년 이상	특정사항 없음																																														
점자교육	☐	☐	☐	☐	☐	☐	☐	☐	☐	☐																																														
보행	☐	☐	☐	☐	☐	☐	☐	☐	☐	☐																																														
일상생활	☐	☐	☐	☐	☐	☐	☐	☐	☐	☐																																														
정보화	☐	☐	☐	☐	☐	☐	☐	☐	☐	☐																																														

D11-6) 기초재활교육을 받으려 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 교육기관을 잘 몰라서 ☐ 교육장소가 너무 멀어서 ☐ 기타()	D12) 귀하는 점자해독이 가능하십니까? ☐ 읽기 가능 ☐ 쓰기 가능 ☐ 짧은 문장 읽기 가능 ☐ 간단한 단어, 숫자만 가능 ☐ 점자해독이 모두 가능하지 않음 ☐ 읽기/쓰기 모두 가능 ☐ 기타()
--	---

E. 건강 관련 사항

E1) 귀하는 현재 안질환이 있습니까? ☐ 없다 ☐ 3개월 미만 투병 무렵하고 있다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 무렵하고 있다 ☐ 6개월 이상 투병 무렵하고 있다	E2) 귀하는 2018년 한 해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E3) 귀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신체활동(예: 운동, 걷기, 등산, 자전거 타기 등)을 10분 이상 한 일은 며칠입니까?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7일/매일 ☐ 전혀 하지 않음
--	---	---

E4) 귀하께서 다음 사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 느꼈신 정도를 응답해 주세요.

영역	가. 많이 읽었다 (10점 이상)	가. 조금 읽었다 (5점 이상)	가. 많이 읽었다 (10점 이상)	가. 조금 읽었다 (5점 이상)
가. 먹고 살지 않고 있음이 없다.	☐	☐	☐	☐
나. 비교와 잘 지냈다.	☐	☐	☐	☐
다. 상황이 우울했다.	☐	☐	☐	☐
라.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	☐	☐	☐
마. 잠을 잘 못 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	☐	☐	☐
바. 세상이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	☐	☐	☐
사. 큰 불안 없이 생활했다.	☐	☐	☐	☐
아.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	☐	☐	☐
자. 마음이 슬펐다.	☐	☐	☐	☐
차.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	☐	☐	☐
카. 도무지 뭐 해 나갈 방법이 나지 않았다.	☐	☐	☐	☐

F. 취업 관련 사항

F1-1) 귀하의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F2) 귀하의 현재 직명은 무엇입니까?
--------------------------	-----------------------

F1-2) 귀하의 총 근무 연수는?
(년 개월)

F2)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자연열(안마사 포함) ☐ 림용직(안마사 포함)
☐ 정규직(안마사 포함) ☐ 주부 ☐ 학생·농림·국영 포함)
☐ 기타

F3) 현재 일하는 줄리언은 근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F4) 현재 작업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응답)

□ 일반사업장	□ 정부 및 준정부 기관	□ 다른 수입	□ 직장 내 퇴임관계	□ 승진문제
□ 특수사업장	□ 장애인복지시설(보통요양원, 근로사업장)	□ 무관한 경우	□ 직무 관련 기술 부족	
□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기관(요양보호사 등)		□ 장래 및 퇴직장	□ 장래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 기타		□ 승진권 이용 문제	□ 기타	

F4) 현재 직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 낮은 수일 ☐ 직장 내 대인관계 ☐ 승진문제
☐ 과도한 업무량 ☐ 직무 관련 기술 부족
☐ 정치적 및 성차별 ☐ 장래에 대한 의사소통 문제
☐ 동료근로자 이동 문제 ☐ 기타 ()
☐ 무관함

F5) 취업 유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체크해주세요.

[illegible]

F6)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통, 경력이 맞는 일자리가 없음
- 임금수준, 근로조건이 맞는 곳이 없음
- 근처에 일자리가 없음
- 교육, 기술, 경험 부족
- 건강상태 및 취업경로 부족
- 장래로 인한 업무수행 어려움
- 나이로는 건강적 제한으로
- 기타 { }

※ 마지막으로 본 조사나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복지 향상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2019 경기도 시각장애인 욕구실태조사

경기도 시각장애인 욕구실태조사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 있으며,
이 책의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